

「滿洲國」時期 日帝의 對民支配의 實相

- 保甲制度和 關聯하여 -

尹 輝 鐸

I. 序論

II. 本論

1. 保甲制度의 組織目的과 編成實態
2. 保甲制度의 運用實態
3. 保甲制度의 矛盾과 街村制로의 移行

III. 結論

I. 序 論

日帝의 傀儡國家라고 불렀던 「滿洲國」의 총인구는 1934년 당시 약 3천 30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農家人口는 84.7%를 차지하고 있었다.¹⁾ 따라서 「滿洲國」에서의 민중 지배는 곧 농촌 지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제의 식민 통치상 농촌(혹은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았다. 더욱이 만주에서의 항일 무장 투쟁 역시 농촌(혹은 농민)을 토대로 삼아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滿洲國」에 대한 식민

1) 『滿洲年鑑』(昭和 14年版)(新京, 滿洲日日新聞社, 1938), 165쪽.

통치의 안정을 기본 과제로 삼고 있던 일제로서는 농촌(혹은 농민)에 대한 지배권 확립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주 농촌(혹은 농민) 지배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서 일제가 조직한 것이 保甲制度였다. 보갑제도는 日帝가 소수의 지배 민족인 일본인을 주축으로 광대한 滿洲 전역의 수많은 농민들을 지배하는 데에서 파생되는 식민 통치상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민중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보갑제도는 警察力·行政力이 방대한 만주 농촌의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치안 및 행정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제의 식민 정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보갑제도가 만주에 대한 일제의 식민 통치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갑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²⁾는 사실상 全無하다시피한 실정이다. 이것은 보갑제도에 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만주국」 시기 일제의 농촌(혹은 농민) 행정 지배에 관한 연구³⁾의 대부분이 行政組織機構의 概況을 파악하는 데에 역점이 두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주국」 시기 일제의 농촌(혹은 농민) 지배의 증점은, 행정적 차원보다도 치안적 차원에 두어졌다. 왜냐하면 당시에

2) 保甲制度에 관한 연구물로는 風間秀人, 『農村行政支配』, 淺田喬二·小林英夫 編,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東京, 時潮社, 1986)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글 역시 「만주국」 전시기에 걸친 일제의 농촌 행정 지배라는 차원에서 씌여졌기 때문에, 보갑제도를 토대로 한 일제의 對民支配의 實相은 불과 몇 쪽에 걸쳐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만주국」 시기 일제가 실시한 보갑제도의 구체적인 실태와 그것에 입각한 일제의 대민 지배의 실상을 엿보기는 어렵다.

3) 여기에 관한 先驅的인 연구물로는 鈴木隆史, 『戰時下の植民地』, 『岩波講座 日本歴史 21 近代 8』(1977); 鈴木隆史, 『滿洲國論』, 今井清一 編, 『體系 日本現代史 第2卷 十五年戰爭と東アジア』(1979); 岡部牧夫, 『滿洲國』(1978) 등이 있다.

는 항일세력이 만주 각지에서 武裝투쟁을 통해 「만주국」치안의 소위 '암적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주국」시기 일제의 농촌(혹은 농민) 지배의 실상에 관한 연구는 행정적 차원보다도 치안적 차원에 비중을 두고 다루어야 그 지배의 본질을 좀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제가 보갑제도를 조직한 목적은 무엇이고, 그것의 편성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리고 보갑제도는 만주 농촌 사회에서 어떻게 운영되었고, 그것이 만주 농촌 사회 혹은 농민들의 실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자. 끝으로 보갑제도를 통한 농촌(혹은 농민)의 지배라는 측면에서 일제가 거둔 성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자.

II. 本 論

1. 保甲制度의 組織目的과 編成實態

(1) 保甲制度의 組織目的

일제는 이미 臺灣 및 關東州에서 실시되어 치안 유지의 효과를 얻었던⁴⁾ 보갑제도를 만주 농촌에서도 실시했다. 그렇다면 일제가 보갑제도를 조직한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의 편성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제는 1933년 12월 「暫行保甲法」(敎令 제96호)을 공포하고 다음해 1월 「暫行保甲法施行規則」(民政部令 제2호)을 공포했다. 그리고 동년 2월 「暫行保甲法施行心得에 관한 件」(民政部 訓令 제95호)을 훈령했

4) 加藤豊隆, 「滿洲國警察小史 --- 滿洲國權力의 實態について ---」(東京, 滿蒙同胞援護會 愛媛縣支部, 1970), 98쪽.

다. 「暫行保甲法」에서 표명하고 있는 보갑제도는 古來의 保甲制度와는 달리 ① 국가 사회 생활의 향상 발전과 王道政治의 실현, ② 치안 유지, ③ 국가 관념 및 自治觀念의 양성이라는 3대 항목의 실현을 거시적인 목표로 삼았다.⁵⁾ 그리고 일제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보갑제도의 구체적인 목적은 保·甲·牌의 조직, 連坐制度⁶⁾의 적용, 自衛團의 조직을 통해 相互友愛와 相互扶助로써 地方의 安寧을 유지하고 뜻밖의 긴급한 危害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警察을 補助하는 임무를 담당하려는 것이었다.⁷⁾

그러나 보갑제도의 실제적인 목적은 경찰력이 충분하지 못한 당시의 상황에서, 이 조직으로 하여금 치안 임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경찰의 치안 유지 기능을 보조하도록 하는 데에 있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일제는 보·갑·패를 조직한 뒤 이 조직으로 하여금 경찰의 戶口調査 및 銃器團束活動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항일 세력의 潛入을 防止하고 항일 세력과 주민들의 접촉을 차단시킴은 물론, 총기가 항일 세력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다음에 일제는 보·갑·패의 조직에 連坐制度를 적용시켜 주민들 상호간의 감시를 조장함으로써, 주민들의 通匪行爲(항일 유격대와 내통하는 행위) 및 주민들이 抗日遊擊隊에 투신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끝으로 일제는 자위단을 조직한 뒤 이 조직으로 하여금 항일 무장 세력의 침입에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치안 유지 효과를 올리려고

5) 滿洲國 治安部 警務司 編, 『滿洲國警察史』, 上卷(新京, 同警務司, 1940), 352쪽 및 滿洲國 民政部 警務司 編, 『保甲制度特別工作概況』(新京, 同警務司, 1935), 120쪽.

6) 주민들 가운데 일정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全牌의 각 戶主가 그 행위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保甲制度代替基層行政』, 滿洲國通信社 編, 『滿洲國現勢』(康德三年版)(大連, 滿洲國通信社, 1936)(여기에서는 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合編,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 『偽滿傀儡政權』(北京, 中華書局, 1994), 499쪽에서 재인용)).

7) 「暫行保甲法」 제1조, 滿洲國 民政部 編, 『保甲制度論』(新京, 同部, 1936), 105쪽 및 滿洲國史刊行會 編, 『滿洲國史』(各論)(東京, 滿蒙同胞援護會, 1970) 上卷, 521쪽.

했던 것이다.

원래 보갑법은 인구가 희박한 興安 各省을 제외한 전지역을 실시 대상으로 했다(잠행보갑법 附則 제2항). 그리고 奉天市나 哈爾濱市와 같이 치안 상황이 양호해서 이 법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만주국」 民政部大臣의 인가를 얻어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잠행보갑법 제23조).⁸⁾ 결국 이 법을 暫行法으로 한 것은, 보갑 제도가 영구적인 제도일 필요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보갑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잠행보갑법」은 경찰 제도가 발달해서 지방의 치안이 확립되면 보갑제도는 폐지되어도 좋다는 것을 예상하고 제정한 과도기적인 便法이었던 것이다.⁹⁾

(2) 保·甲·牌 및 自衛團의 組織實態

保甲制度의 組織을 살펴보면, 10戶를 가지고 1牌를 조직한 뒤, 村 또는 여기에 준하는 구역¹⁰⁾ 안의 패를 가지고 1甲(일반적으로 10牌)을 조직했으며, 경찰서 관할 구역 내의 갑을 가지고 1保를 구성했다. 또한 市街地에서는 대략 10패를 가지고 1갑을 조직했다. 그리고 保·甲·牌의 각각에는 保長·副保長 --- 甲長·副甲長 --- 牌長(패에는 副牌長을 두지 않았다) 각 1명을 배치했다. 이들 보갑제의 각 長들은 規定上 所定의 手續에 따라 互選되도록 되어 있었다. 즉 「잠행보갑법」의 규정에 의하면, 牌長은 牌內 각 家長에 의해,¹¹⁾ 갑장과 부갑장은 甲內 각 패

8)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情報處 編, 『省政彙覽 第1輯 --- 吉林省篇 ---』(新京, 同情報處, 1935), 268쪽.

9) 菊池亨, 「滿洲現農村自治制度の若干の考察」, 大亞細亞日本青年聯盟 編, 『第一回滿洲研究團報告』(東京, 同聯盟, 1935), 181쪽.

10) 村에 準하는 구역이라는 것은, 吉林省 및 黑龍江省에서의 鄉 또는 鎮을 말하는 데, 이것은 奉天省에서의 村에 상당한다(「暫行保甲法施行에 관한 件」(민정부 훈령 제95호) 第一 暫行保甲法施行心得, 앞의 책 『保甲制度論』 부록, 119쪽).

11) 安東省 莊河縣의 경우 牌長은 牌內 각 家長들에 의해 互選되었지만, 패장이 될 수 있는 자는 日工(日傭勞動者)과 年工(머슴)을 제외한 土地所有者나 耕作者에 한정

장들에 의해, 보장과 부보장은 保內 각 갑장들에 의해 호선되도록 되어 있었다.¹²⁾ 그리고 선출된 牌長·副甲長·甲長은 경찰서장에게, 副保長·保長은 경찰서장을 거쳐 地方行政官署長의 認可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선임된 각 長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辭職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보갑제도에의 加入은 강제적인 義務條項이었던 것이다. 이때 경찰서장은 이들 長들이 업무 집행상 부적당하다고 간주될 때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保·甲·牌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명령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패장은 제1차로 갑장, 제2차로 보장, 제3차로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갑장은 제1차로 보장, 제2차로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보장은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¹³⁾

한편 경찰서장은 주민의 위급한 危害를 警戒하거나 防禦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장 또는 갑장에 대해 義務自衛團의 組織을 명할 수 있었다.¹⁴⁾ 자위단에게 부여된 표면적인 임무는 보갑 내의 치안 유지 임무에 힘쓰고 항일 유격대에 대한 警備 업무·정보 수집·토벌, 戶口調查, 銃器回收, 범죄 수사 등에 협력해서 현의 치안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었다.¹⁵⁾ 자위단원의 자격을 보면, 그 甲에 계속해서 1년 이상 住所를 지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로서 公務員·不具者·病者를 제외한 모든 남자를 대상으로 했다. 保의 자위단에는 團總·副團總 각 1인, 甲의 자위단에는 團長·副團長 각 1인을 배치하도록 했는데, 부단총 및 부단장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각각 2인 이상을 둘 수 있었

되었다(滿洲國 國務院 實業部 臨時產業調查局 編, 『農村實態調查一般調查報告書 --- 安東省莊河縣 ---』(新京, 同調查局, 1936), 327쪽.

12) 『暫行保甲法』 제3조 제4항. 앞의 책 『保甲制度論』, 105쪽.

13) 『暫行保甲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앞의 책 『滿洲國警察小史』, 99쪽 및 앞의 책 『滿洲國史』(各論) 上卷, 521쪽 참조.

14) 『暫行保甲法』 제10조 및 앞의 책 『滿洲國史』(各論) 上卷, 522쪽 참조.

15) 滿洲國 國務院 實業部 臨時產業調查局 編, 『農村社會生活篇 --- 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 ---』(産調資料45-9)(新京, 同調查局, 1937), 173쪽.

다. 그리고 「잠행보갑법」에는 단장 및 부단장은 갑의 자위단원이 이것을 互選하고, 단총 및 부단총은 보의 단장이 이것을 互選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 각 장은 보갑제의 장들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없이 辭職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역시 명령 계통에 의해 각각 上部 및 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던 것이다.¹⁶⁾ 자위단원은 모두 名譽職으로서 규정상 재정적인 보장이 거의 주어지지 않도록 했다. 17) 그리고 保·甲·牌 및 自衛團의 經費는 보·갑·패에 주소를 지닌 家長으로 하여금 그 所有地 및 資産의 多寡에 따라 分擔하도록 했다.¹⁸⁾

“國民的인 警察의 使命을 부여받은 하나의 조직”¹⁹⁾이라고 불려졌던 보갑제도는 단기간에 만주 각지에서 조직되었는데, 그 실태(<표-1> 참조)를 보면, 1935년 12월말까지 만주 각지에서 조직된 保·甲·牌數는 각각 1,458개, 1만 9,900개, 44만 197개였고, 자위단수는 9,861개에 달하고 있었다.

<표-1> 保·甲·牌 및 自衛團의 組織狀況

年 度	保 數	甲 數	牌 數	自衛團數	自衛團員數
1934년 12월말	1,267	22,403	314,306	9,775	1,233
1935년 12월말	1,458	19,900	440,197	9,861	1,774

<출전> 1934년 12월말의 조직 상황은 滿洲國 民政部 警務司 編, 『滿洲國警察概要』(新京, 同警務司, 1935), 796쪽에서; 1935년 12월말의 조직 상황은 永井定, 『保甲制度の現在と將來』(『滿洲行政』 제3권 제11호, 1936.11), 16-17쪽에서 인용.

16) 「暫行保甲法」 제14조, 제15조, 제16조.

17) 「暫行保甲法」 제20조.

18) 「暫行保甲法施行規則」 제12조.

19) 滿洲國 民政部 警務司 編, 『保甲制度を中心とする諸問題』(新京, 同警務司, 1936), 12쪽.

그런데 보갑제도에 관한 여러가지 법령들이 공포될 때에는 중앙과 지방 모두 지도를 담당해야 할 警察陣容이 충실하지 못했고,²⁰⁾ 적은 인원과 경비를 가지고 「만주국」 전역에서 보갑제도를 강화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²¹⁾ 법령에 기초한 保·甲·牌의 조직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그쳤고 그 활동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1934년 12월에 이르러 警務司 및 각 省警察廳에 司法科가 신설되어 保甲事務를 主管하게 되었고, 소위 治安肅正工作의 진척에 따라 보갑제도의 확충·강화에 힘을 쏟기 시작하면서 종래의 전국 一律強化主義를 배제하고 治安·交通·財政·民度 등을 고려하여 1935년부터 3개년 계획 하에 重點主義를 채택했다. 이리하여 3개년 계획의 제1년도인 1935년에 「만주국」 정부는 상술한 조건을 갖춘 50개 縣과 2개 警察廳 管下地域을 選定하고 이들 縣에 保甲專務指導官을 배치한 뒤 이들 지역에 대해 特別工作을 실행했다.²²⁾

3개년 계획의 제1년도인 1935년에 보갑제도 특별 공작 지역으로 선정된 50개 縣 및 2개 경찰청 管下地域, 즉 吉林省의 永吉·雙陽·懷德·德惠·九台·農安縣, 龍江省의 龍江·訥河·龍鎮·克山·洮南縣, 黑河省의 瑯琿縣, 三江省의 樺川·富錦縣, 濱江省의 呼蘭·阿城·雙城·海倫·綏化縣, 間島省의 延吉·琿春縣, 安東省의 安東·鳳城縣, 奉天省의 瀋陽·撫順·本溪·遼陽·海城·營口·蓋平·復·新民·鐵嶺·遼源·梨樹·昌圖·開原·海龍·清原縣, 錦州省의 錦·綏中·興城·錦西·義縣, 熱河省의 承德·灤平·凌源·平泉·豐寧縣, 그리고 首都警察廳·哈爾濱警察廳에서 총 638개의 保, 8,866개의 甲, 23만 3,612개의 牌, 그리고 6,427개의 自衛團이 편성되었다.²³⁾

20) 앞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353-354쪽.

21) 民政部 總務司 資料科, 「保甲制度を中心とする諸問題(一)」(滿洲國 民政部 編, 『民政部調査月報』 제2권 제4호, 1937.4), 88쪽.

22) 위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353-354쪽.

23) 앞의 공작 보고서 『保甲制度特別工作概況』, 5-56쪽. 이때 保甲數 및 自衛團員數

이처럼 소수의 현을 지정해서 특별 공작을 실행한 것은, 보갑제도와 관련된 人的 資源 및 經費가 부족한 현실에서 「만주국」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전국적인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²⁴⁾ 그래서 「만주국」 정부는 보갑제도의 실시에 따른 경비와 성과를 고려해서, 치안과 교통이 양호하고 財政이 풍부하며 民度가 높은 지역부터 먼저 보갑제도를 실시한 뒤, 점차 치안이 불량한 지역으로까지 보갑제도의 실시를 확대해서²⁵⁾ 中央 및 각省의 지도력을 여기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다.²⁶⁾

1936년에는 보갑제도 3개년 계획에 입각해서 새로 52개 현이 保甲特別工作 對象縣으로 지정되었다. 이 현들을 열거하면, 吉林省의 盤石·伊通·長嶺·夫餘·榆樹縣, 龍江省의 明水·拜泉·克東·依安·林甸·富裕·鎮東·泰來·大賚·洮南·開通縣, 黑河省의 烏雲·呼瑪·奇克·遜河縣, 三江省의 勃利·同江·依蘭·方正·湯原縣, 濱江省의 巴彥·望奎·青岡·安達·蘭西·肇東·肇州·賓縣, 間島省의 汪清·和龍縣, 安東省의 莊河·寬甸·臨江縣, 奉天省의 東豐·西安·雙山·康平·法庫·遼中縣, 錦州省의 黑山·北鎮·台安·盤山縣, 熱河省의 赤峰·寧城·隆化·圍陽縣 등이었다.²⁷⁾

그리고 1937년에는 나머지 61개 현이 保甲特別工作 對象縣으로서 추가로 지정되었다. 이 현들을 열거하면, 吉林省의 乾安·舒蘭·額穆·敦化·樺甸縣, 龍江省의 泰康·景星·甘南·德都·嫩江·通北·突泉·安廣·瞻榆縣, 黑河省의 漠河·鷓浦·佛山縣, 三江省의 寶清·饒河·撫遠·通河·鳳山·蘿北·綏濱縣, 濱江省의 五常·珠河·葦河·延壽·木蘭·東興·慶城·鐵驪·綏稜縣, 목단강省의 東寧·寧安·穆稜·密山·虎林縣, 間島省의 安圖縣, 安東

는 1935년 12월의 수치이다.

24) 앞의 공작 보고서 『保甲制度特別工作概況』, 2쪽 참조.

25) 위의 공작 보고서 『保甲制度特別工作概況』, 2쪽.

26) 위의 공작 보고서 『保甲制度特別工作概況』, 2쪽 참조.

27) 앞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355쪽.

省의 岫巖·桓仁縣, 通化省의 通化·輯安·撫松·長白·柳河·金川·輝南·溧江縣, 奉天省의 興京縣, 錦州省의 朝陽·阜新·彰武縣, 熱河省의 新惠·建平·建昌·青龍·興隆地區, 興安省의 通遼·開魯·林西縣 등이었다.²⁸⁾

<표-2> 主要 省의 保·甲·牌 및 自衛團의 組織實態

省 別	調查年度	保	甲	牌	自衛團	自 衛 團 員		
						有給	無給常備	無給豫備
間島省	1936.3	56	621	7,278	505(4)	55	31,566	
吉林省	1935.3	172	3,232	54,546	664		59,761	
安東省	1936.7	204	864	32,029	647	1,609	8,551	240,839
奉天省	1935.12	304	3,491	134,724	871	881	124,478	704,725
三江省	1935.12	116	1,401	13,534	616	881	4,676	8,254
通化省	1939년말	121	875	8,571	-	-	-	-

<출전> 間島省은 앞의 책 『省政彙覽 第6輯 --- 間島省篇 ---』, 327-332쪽; 吉林省은 앞의 책 『省政彙覽 第1輯 --- 吉林省篇 ---』, 269쪽; 安東省은 앞의 책 『省政彙覽 第7輯 --- 安東省篇 ---』, 332-335쪽; 奉天省은 앞의 책 『省政彙覽 第8輯 --- 奉天省篇 ---』, 606쪽 附表 「現在保甲制度實施狀況表」; 三江省은 앞의 책 『省政彙覽 第4輯 --- 三江省篇 ---』, 254-255쪽; 通化省은 曾凡秀의 進술, 「“野副大討伐”始末」, 앞의 자료집 『偽滿軍事』, 248쪽에서 인용.

몇몇 주요 성의 보·갑·패 및 자위단의 조직 실태를 살펴보면 <표-2>와 같다. 이 시기 자위단의 조직 실태에서 특징적인 것은, 자위단의 절대 다수가 소위 義勇自衛團, 다시 말해 義務自衛團으로 조직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치안이 열악해서 상시 경비를 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有給自衛團이 존속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안동성에서는 보·갑·패의 조직과 관련해서, 牌는 사회 생활의 가장 강한 조직 단위로서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했고, 甲은 자연 발생적인 部落關係를 중시해서 共同組合的인 施設對象으로 될 수 있도록 경제적

28) 앞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356쪽.

요소를 주로 한 단체로 만들도록 했다. 더 나아가 保는 패와 갑을 통할하는 자치적·행정적 색채를 띤 단체로 만들도록 했다.²⁹⁾ 보갑구역은 「잠해보갑법」에 따라 市街地에서는 1牌 1甲, 기타 지역에서는 1區 1保, 1村 1甲을 원칙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했다.³⁰⁾

(3) 保甲職員과 自衛團 幹部의 職務 및 選出實態

그렇다면 위와 같이 조직된 보갑제도가 「잠해보갑법」상의 규정에 입각해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보갑제도 운영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保甲職員들의 職務를 살펴보면, 保長의 직무는 ① 保內住民의 敎誡에 관한 사항, ② 褒賞³¹⁾救恤事項, ③ 보 및 갑의 자위단의 사무 감독, ④ 保의 所要經費豫算의 編成, ⑤ 갑 및 패의 소요 경비 예산의 심사 및 그 徵收의 감독 등이었다. 甲長의 직무는 ① 甲內住民의 敎誡에 관한 사항, ② 規約違反者의 處分 및 過怠金の 徵收處理, ③ 甲自衛團의 사무 감독, ④ 갑 및 패의 소요 경비 예산의 편성 및 그 賦課徵收 등이었다. 牌長의 직무는 ① 牌內住民의 敎誡에 관한 사항, ② 牌內의 戶口調査 및 銃器團束과 관련해서 경찰 관리를 보조하는 것 등이었다.³²⁾ 이러한 규정상의 직무 사항들을 살펴보면, 보갑제도의 각 장들은 경계 및 방어 임무, 通匪 예방, 자위단 및 그 경비 징수, 규약 위반자 처분, 戶口調査, 무기 단속 등의 직무를 통해 경찰

29) 앞의 工作 指針 「康德三年度保甲特別工作指針」 제6조, 86쪽.

30) 奉天省公署, 「保甲制度指導方針」(『宣撫月報』 제2권 제7호, 1937.7), 84쪽.

31) 참고적으로 安東省 撫松縣의 경우 항일 유격대를 사살하거나 총기를 탈취한 경우 首級 1개, 銃器 1정에 대해서는 각각 5원씩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同省 臨江縣에서는 治本工作 과정에서 공로가 두드러진 자에게는 3원 내지 10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앞의 보고서 「東邊道治安工作委員會と宣撫工作」, 90쪽).

32) 「暫行保甲法施行規則」(民政部令 제2호) 제4조, 제5조, 제6조, 앞의 책 「保甲制度論」 附錄, 114쪽 및 永富直明, 「保甲制度論(二)」(『民政部調査月報』 제1권 제8호, 1936.8), 43쪽.

관리를 보조하고 보갑 규약을 정립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³⁾ 그런데 규정과는 달리, 保·甲·牌長의 실제 임무는 縣公署의 手足이 되어 縣으로부터 하달된 포고문의 전달, 納稅督促, 호구 조사, 총기 회수, 보갑법의 선전, 保甲民에 대한 감시·감독, 賦役 및 徵發時 보갑민의 動員 등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³⁴⁾

다음에 保甲職員들의 選出過程을 보면, 그 규정이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실례로 奉天省 海城縣의 경우 牌長은 대개 保長이 후보자를 선정·지명하고 각 家長들에게 이것을 報知·承認케 했다. 그리고 보장을 제외한 甲長·副甲長·副保長 등의 보갑 직원들은 보장의 추천에 의해 경찰서장 혹은 縣長이 이것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때 표면적으로 보장이 보갑 직원들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지도력과 보갑제에 대한 熱意였다.³⁵⁾

이처럼 보갑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된 채, 보장 및 경찰서장 혹은 현장 등에 의해 보갑 직원들이 임명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갑제도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보장·부보장 및 自衛團 團總 등은 지방의 有力者로서 資産과 名望이 있는 地主들이었거나 官公職의 경력이 있는 자들이었다(<표-3> 참조). 그리고 甲長·牌長·自衛團長·屯長

33) 앞의 책 『滿洲國史』(各論) 上卷, 521-522쪽.

34) 滿洲國 國務院 實業部 臨時産業調査局 編, 『農村社會生活篇 ---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 ---』(産調資料 45-9)(新京, 同調査局, 1937), 164쪽 및 168쪽. 실례로 安東省 鳳城縣의 경우, 保長의 실제 임무는 항일 유격대에 관한 情報探索, 保甲指導, 保甲配分, 戶口調査 지도 등이었고, 甲長의 실제 임무는 항일 유격대에 관한 情報報告, 浮浪人 조사, 牌長의 감독, 주민의 敎戒 등이었으며, 牌長의 실제 임무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馬車의 斡旋, 道路補修에 필요한 賦役의 할당, 항일 유격대에 관한 情報報告, 公文書 전달, 村費(保甲費 포함) 징수, 轉出入者에 관한 사항, 夏季 노동자(즉 苦力)의 往來狀況 監視 등이었다(滿洲國 國務院 實業部 臨時産業調査局 編, 『農村實態調査一般調査報告書 --- 安東省鳳城縣 ---』(新京, 同調査局, 1936), 383-384쪽).

35) 野間清·山本純愚, 「海城縣に於ける農村行政組織と其の運營現態」, 『滿鐵調査月報』, 卷17권 제3호, 1937. 3), 100쪽.

등도 대부분 地主·富農·中農 등 농촌의 資産階層이었다(<표-4> 참조). 이와 관련해서 濱江省 海倫縣에서의 甲長의 被選舉資格要件을 살펴보면, ① 土地所有者로서 財産이 있고 甲과 牌內에서 信用이 있는 者, ② 가족 가운데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본인은 公務를 집행할 餘暇가 있는 자, ③ 가족 가운데 교육을 받은 자가 있어서 공무의 전달이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牌장의 皮선거 자격 요건으로는, ① 토지 소유자로서 牌內에 信用이 있는 자, ② 牌장의 공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었다.³⁶⁾ 결국 갑장이나 牌장의 皮선거 자격 요건으로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토지 소유자로서 재산이 있고 신용이 있는 자'였다.³⁷⁾ 더 나아가 保甲의 기초 단위인 牌의 보갑 사무를 담당하는 牌長들도 대부분 보장·갑장 등과 마찬가지로 牌內에서 資産과 信用이 있는 장년자들이었다.³⁸⁾

그런데 이들 보갑 직원들은 상술한 것처럼 대부분 해당 지역 경찰 서장이나 보장 등에 의해 임명되고 있었지만, 濱江省 蘭西縣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기도 했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는 보갑 직원을 선출하는 자리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제한되고 있었다.

즉 이들 지역의 경우 보갑 직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들은 대체로 토지 소유자들이었다. 그런데 他屯에 토지를 소유하고

36) 앞의 농촌 실태 조사 보고서 『農村社會生活篇 ---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 ---』, 164쪽.

37) 실례로 1937년 4월 料甸子保의 副團總·書記·甲長 등의 경력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들 保甲職員들은 대부분 資産이나 경력이 풍부한 壯年者들이었다(善生永助, 「濱江省阿城縣의 保甲行政組織と其の運營狀態(一)」, 『滿鐵調査月報』 제17권 제11호, 1937. 11), 81-84쪽 참조).

38) 善生永助, 앞의 글 「濱江省阿城縣의 保甲行政組織と其の運營狀態(一)」, 81-84쪽 참조.

<표-3> 保甲職員의 經歷現況

縣名	保名	保甲 役員	經 歷	所有地 · 資産	調查 年月
阿 城 縣	阿城保	保長 副保長	分所長, 巡官, 稽查員 商店經理, 甲長	25晌 15晌	1936 "
	料甸子保	保長 副保長 團總	副保長 徵收員 團董, 團長	35晌 50晌 1만 원	" " 1937. 4
	永增源保	保長 副保長	軍官團總, 巡官, 敎員, 甲牌長	48晌 18晌	1936 "
	正紅旗保	保長 副保長	農會長, 甲長 團總	21晌 30晌	" "
	二層甸子保	保長 副保長	特區保長, 甲長, 常務會董, 甲長	40晌 25晌	" "
永 吉 縣	樺皮廠保	保長	隊長	不詳	1934. 10
		副保長 團總	團長 自衛團長	" "	" 1933. 5
	烏拉街保	保長 副保長 團總	商會長 保長 隊長	" " "	1933. 11 " 1936. 4
海城	넘軍堡保	保長	地主	140畝	1936. 12

<출전> 阿城縣은 善生永助, 「濱江省阿城縣의保甲行政組織と其の運營狀態(一)」(『滿鐵調査月報』 제17권 제11호, 1937. 11), 80-81쪽; 永吉縣은 善生永助, 「吉林省永吉縣의保甲行政組織と其の運營狀態」(『滿鐵調査月報』 제15권 제12호, 1935. 12), 180-181쪽; 奉天省 海城縣은 野間清·山本純忠, 「海城縣に於ける農村行政組織と其の運營現態」(『滿鐵調査月報』 제17권 제3호, 1937. 3), 101쪽에서 인용.

있는 자는 선출 장소에 출석할 권리가 없었고, 소작인 역시 출석할 권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소작인이라고 할지라도 해

<표-4> 保·甲·牌·自衛團長의 屯에서의 地位(1934년)

縣別	保甲職名	經營方式	地位	所有地	縣別	保甲職名	經營方式	地位	所有地
呼蘭	甲 長	自作	貧 農	10.7晌	富裕	牌 長	自作	貧農	10.83晌
"	副甲長	地·自	"	8.4	"	"	自小	富農	161.5
巴彥	甲長團總	地·自·小	地 主	151.5	"	屯 長	"	中農	70.0
"	副甲長	地·自	富 農	129.5	訥河	牌 長	地自	富農	449.0
蘭西	甲 長	"	地 主	10.0	"	甲 長	自作	中農	20.3
"	保 長	自·小	中 農	14.7	拜泉	屯 長	地·自	地 主	111.44
肇州	甲 長	地 主	地 主	114.0	明水	"	地·自	"	76.6
"	牌 長	"	"	63.1	龍鎮	自衛團長	小作	貧農	-
"	"	"	"	42.0	海倫	甲 長	-	富農	-
"	"	地·自·小	中 農	53.5	"	"	-	地 主	-
"	"	自作	"	51.8	"	牌 長	-	富農	-
"	"	"	半雇農	2.0	"	"	-	中農	-
"	"	小作	中 農	-	"	"	-	"	-
"	"	"	"	-	"	"	-	"	-
"	"	"	"	-	"	"	-	地 主	-
富裕	甲 長	地·自	地 主	129.5晌	"	"	-	貧農	-

<출전> 海倫縣은 앞의 농촌 실태 조사 보고서 『農村社會生活篇 ---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 ---』(産調資料 45-9), 163-164쪽에서; 나머지 현은 위의 調査報告書, 155쪽에서 인용.

<비고> 呼蘭縣의 해당 屯은 孟家屯, 巴彥縣은 西太平莊, 蘭西縣은 石家園子屯, 肇州縣은 張家大園子 富裕縣은 七家戶屯과 李地房子屯(屯長의 경우), 訥河縣은 孫家井, 拜泉縣은 王殿元屯, 明水縣은 郭殿仁屯, 龍鎮縣은 幫辦屯이다. 地·自은 地主兼自作을, 地·自·小는 地主兼自作兼小作을, 自·小는 自作兼小作을 의미한다. 地位는 實質的 熟地 所有面積과 耕作面積을 고려해서 산출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滿洲國 實業部 臨時産業調査局 編, 『農家概況篇 ---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 ---』(産調資料 45-1)(新京, 同調査局, 1937), 6-7쪽에 의한 것이다.

당 屯내에 커다란 토지를 소작하고 있는 자는 선출 자리에 출석할 수 있었다.³⁹⁾

요컨대 보갑제 운영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던 보·갑·패의 長은 警察機關의 意志를 반영하고 있던 舊支配層 속에서 선출되었던 것이다.⁴⁰⁾ 결국 일제는 식민 통치에 협조적이거나 우호적인 資産家나 公職者 등 지방의 親日的인 舊支配層을 「만주국」의 민중 지배 기구인 보갑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이들로 하여금 關東軍을 대신해서 지방을 지배하도록 했던 것이다.

한편 보갑제도는 「만주국」의 지방 통치에서 礎石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 하에서 중요시되었던 것은 自衛團의 結成이었다.⁴¹⁾ 「暫行保甲法」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保長 또는 甲長에 대해 자위단의 조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을 보면, 자위단의 조직은 보갑제도의 본래적인 업무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위단의 편성이 보갑제도 시행의 최대 업무로서, 자위단의 활동은 보갑제 운영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⁴²⁾ 또한 「잠행보갑법」에 의하면 보장·갑장·패장은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盜匪를 警戒·防禦하고 주민을 敎戒해서 이들의 匪化를 방지하며, 褒賞救恤을 하고 자위단 사무를 감독해서 經費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規約 違反者를 처분하고 戶口調査 및 銃器團束을 하는 등 경찰 관리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자위단의 사무 및 자위단의 실제 지도·훈련은, 團總이 副團總의 보조를 받아 행하였기 때문에, 보장·갑장·패장은 단순한 補助的存在에 불과했다.⁴³⁾ 결국 保甲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통솔했던 자는

39) 앞의 농촌 실태 조사 보고서 『農村社會生活篇 ---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 ---』, 167쪽.

40) 風間秀人, 「農村行政支配」, 淺田喬二·小林英夫 編, 『日本帝國主義의 滿洲支配』(東京, 時潮社, 1986), 263쪽.

41) 風間秀人, 앞의 글 「農村行政支配」, 263쪽.

42) 앞의 글 「海城縣に於ける農村行政組織と其の運營現態」, 96쪽.

43) 和田喜一郎·橫地馨富, 「錦州省錦縣に於ける農村行政組織と其の運營現態」(『滿鐵

보갑 직원이 아니라 자위단원이었던 것이다.⁴⁴⁾

이처럼 보갑제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자위단원은 규정상 보갑 직원과 마찬가지로 互選되도록 되어 있었다. 즉 단장 및 부단장은 갑의 자위단원이 호선해서 경찰서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단총 및 부단총은 자위단장이 호선해서 경찰서장을 거쳐 縣長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자위단원의 선출 방법 역시 원칙대로 실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위단은 討伐 등을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솔자는 가급적 軍事的 才幹이나 경험을 지녀야 했고 경찰서와 긴밀한 연락을 가져야만 했다. 그래서 奉天省 海城縣의 경우, 자위단원의 선출은 실제로는 互選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추천에 의해 縣長이 결정하고 있었다.⁴⁵⁾

결국 보갑 직원과 자위단 간부에는 대부분 관할 경찰서장이나 縣長이 식민 통치에 협조적이거나 우호적인 資産家나 公職者 등 舊支配層을 임명했던 것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보갑직원들이 「暫行保甲法」 규정에 따라 보갑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기도 했지만, 선출 장소에 출석할 수 있었던 자들 역시 토지 소유자이거나 자산가였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제는 親日的인 資産家나 공직자 등 구지배층을 보갑제도에 끌어들이고, 이들을 통해 만주 농민들에 대한 '以夷制夷' 的인 代理支配體制를 구축해서 만주 농민들과 항일 유격대의 연계를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2. 保甲制度의 運用實態

그렇다면 보갑제도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보갑제

調査月報」 제17권 제3호, 1937. 3), 30쪽.

44) 위의 글 「海城縣に於ける農村行政組織と其の運營現態」, 96쪽.

45) 위의 글 「海城縣に於ける農村行政組織と其の運營現態」, 101쪽.

도의 운영상의 특징은 連坐罰金制度의 採用 및 戶口調査를 통한 住民의 日常生活과 移動의 철저한 監視, 自衛團의 組織을 통한 부락의 自衛와 討伐業務의 補助, 그리고 銃器·彈藥 回收業務의 협조라고 할 수 있다.

(1) 連坐制 및 自衛團의 運用實態

연좌 벌금 제도와 관련하여, 牌의 주민 가운데 內亂罪, 外患罪, 公共危險罪, ‘暫行懲治叛徒法’에 규정한 죄, ‘暫行懲治盜匪法’에 규정한 죄, ‘暫行銃砲取締規則’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는 경찰서장은 각 牌에 대해 2원 이하의 連坐罰金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長들은 牌內의 각 家長으로 하여금 連坐責任을 짊어지게 하고 連坐罰金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官에 발각되기 이전에 牌의 주민 가운데 이 사실을 제보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 자가 있을 때 혹은 이 사실이 官에 발각되기 이전에 犯人 자신이 自首할 때에는, 이 연좌 벌금의 輕減 또는 免除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했다.⁴⁶⁾ 이처럼 일제는 보갑제도를 통해 농민 상호간의 감시 체제를 구축해서 주민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했을 뿐만 아니라, 감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連坐法’을 실시했던 것이다.⁴⁷⁾

다음에 보갑제도의 骨幹인 自衛團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자위단은 각 지방의 치안 사정에 따라 편성 실태가 달랐다. 즉 치안이 양호한 지방의 자위단은 常備 武裝 자위단원수가 매우 적거나 없었고, 常備 非武裝 자위단원수도 매우 적었으며, 자위단원의 훈련도 제대로 강행되지 않았다.⁴⁸⁾ 이에 반해 치안 상태가 비교

46) 「暫行保甲法」 제9조.

47) 류병호, 「중국조선족이주개관」(중국조선족청년학회 편, 「중국조선족이 민실록」(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92)), 339쪽.

48) 앞의 글 「海城縣に於ける農村行政組織と其の運營現態」, 98쪽.

적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자위단원이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위단원에 대한 훈련 強度도 비교적 높았다.

만주사변 이전의 만주에서는 군정의 치안력이 지방 곳곳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 각지에 保衛團·自警團·民團·商團 등이 조직되어 각자 지역의 自衛를 맡고 있었다.⁴⁹⁾ 그런데 만주사변 직후 지방의 치안이 문란해지자, 일제는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는 보조 세력으로서 이들 자위 조직들을 재편해서 활용했다. 즉 일제는 귀순한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 부대를 개편하거나 종래에 있던 保衛團을 해산 시켜서 새로 자위단으로 조직했으며, 또한 유사시에 各戶로부터 壯丁을 뽑아서 자위단을 조직했다.⁵⁰⁾ 이렇게 해서 조직된 자위단에서는 일제의 토벌 작전에 끌려나가 戰死하거나 부당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벌 작전으로 戰傷死한 자위단원들에게 財政缺乏으로 인해 제대로 보상도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위단을 기피하거나 그러한 조직에 반발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⁵¹⁾ 이러한 상황에서 財力이 있는 자의 子弟들은 健康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대신 내보내거나 寄附 행위를 한 뒤 자위단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自衛團은 점차 職業化되어 갔고, 심지어 이들 자위단원들이 暴徒와 같은 행동을 자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⁵²⁾

따라서 「만주국」 治安維持會에서는 이들 불량한 무장 단체 및 직업

49) 앞의 책 『滿洲國史』(總論), 330쪽.

50) 滿洲國 民政部 資料科 編, 『滿洲國民政年報』(1934년판)(新京, 同資料科, 1933), 371쪽.

51) 앞의 책 『滿洲國警察小史』, 100쪽; 앞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353쪽; 民政部 警務司 編, 『滿洲國警察概要』(奉天, 同警務司, 1935), 559쪽.

52) 위의 책 『滿洲國警察小史』, 100쪽 및 위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353쪽.

적 자위단을 철폐시키고 대신 義勇自衛團으로 재편한 뒤, 이 조직이 縣長의 통제와 경찰서장의 지휘 하에 경찰의 업무를 補助할 수 있는 機關이 되도록 지도했다.⁵³⁾ 이리하여 「만주국」에서는 1934년 5월 「民政部 訓令 제275호」에 의거하여 「暫行保甲法施行心得」 등에 관한 件」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상술한 職業的 自衛團을 점차 解消시켜 團員 중에 善良하고 優秀한 사람, 다시 말해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은 경찰 관리로 채용하는 길을 열었고, 일반 단원들은 歸農시키거나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되 가급적 이들을 土木工事 등에 雇傭하도록 했다. 그리고 자위단의 해산에 따라 자위단을 떠나는 자에 대해서는 解散手當 등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도 講究되었다.⁵⁴⁾ 더 나아가 「暫行保甲法施行心得」에 관한 件」이 공포되면서 「義務制 自衛團의 強化確立」이 通牒되기에 이르렀다.⁵⁵⁾

상술한 법률들을 통해 일제는 有給自衛團을 폐지·개편해서 소위 義勇(義務)自衛團의 확립에 힘쓰도록 특별 공작을 지시했다.⁵⁶⁾ 이러한 조치로 표면적으로는 자위단원의 절대 다수가 무급의 의무 자위단으로 재편되었고, 예외적으로 치안 상황이 열악한 지역에서만 유급 자위단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들 자위단 복무 대상자들 모두가 의무적으로 자위단원이 되어 밤낮으로 자위단 업무에 종사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위단원은 豫備自衛團員과 常備自衛團員으로 분류되었고, 대개 예비 자위단은 각 保에 하나씩, 상비 자위단은 각 甲에 하나씩 조직되었으며, 예비 자위단은 긴급할 때에만 소집되었다.⁵⁷⁾ 상

53) 위의 책 『滿洲國史』(總論), 330쪽.

54) 「暫行保甲法施行에 관한 件」의 「第三職業的 自衛團의 解散要領과 義務的 自衛團의 確立方策」, 앞의 책 『保甲制度論』 부록 122쪽 및 앞의 책 『滿洲國警察小史』, 100쪽 참조.

55) 앞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353쪽.

56) 앞의 공작 보고서 『保甲制度特別工作概況』, 3쪽 참조.

57) 앞의 농촌 실태 조사 보고서 『農村社會生活篇 ---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 ---』(產調資料45-9), 165쪽.

비 자위단원은 다시 武裝團員과 非武裝團員으로 나누어졌다. 이리하여 자위단의 활동이나 자위단의 업무는 주로 상비 자위단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武裝常備自衛團員은 銃器를 가지고 警察署員과 함께 경계 임무를 담당했고, 非武裝常備自衛團員은 각종 保甲 및 자위단의 일반 적인 雜務를 담당했다.⁵⁸⁾

이들 예비 자위단원 및 상비 무장 자위단원과 상비 비무장 자위단원은 규정상 특정인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략 1개월마다 교대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자위단이 종래와 같이 職業的 性格을 띠는 경우 파생되는 여러가지 폐단을 없애고, 보갑제도 본래의 설립 취지에 따라 자위단을 義勇的 性格의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규정상 이들 자위단원은 無報酬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交代制나 無俸給制가 엄밀하게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⁵⁹⁾ 그 이유는 奉天省 海城縣 當局者의 말처럼, 상비 자위단원은 원칙적으로 村民이 교대로 담당해야 했지만, 실제로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지 못했고, 단시일에 자위단원을 교체해 버리는 것 또한 대단히 불편했으며, 게다가 농민의 입장에서 농번기에 훈련을 받기 위해 여러 번 자위단원의 임무를 맡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다.⁶⁰⁾ 더욱이 치안 상황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치안 관계상 常時 警備를 필요로 했을 뿐만 아니라,⁶¹⁾ 자위단

58) 앞의 글 「海城縣に於ける農村行政組織と其の運営現態」, 97쪽.

59) 위와 같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龍江省 洮南縣 富貴保의 경우, 농민들이 義務制 自衛團에 복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保内の 주민 가운데 2명을 고용하고 보갑비 중에서 매달 7원씩을 지급했다. 그런데 월 7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團丁이 각 甲内の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소유지의 過多에 따라 响當 平均 1角 정도를 부과했다(滿鐵經濟調査會, 「洮南縣に於ける保甲制度並保甲費に關する資料」(여기에서는 앞의 글 「海城縣に於ける農村行政組織と其の運営現態」, 99쪽에서 재인용)).

60) 위의 글 「海城縣に於ける農村行政組織と其の運営現態」, 98쪽.

61)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情報處 編, 『省政彙覽 第1輯 --- 吉林省篇 ---』(新京, 同情報處, 1935), 269쪽.

원 가운데에는 軍警의 討伐作戰에 끌려나가 경찰관과 함께 生死를 같이 한 사람들도 상당수에 달하면서⁶²⁾ 농민들이 자위단을 기피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실제로는 농민들이 적당한 보수를 제공하고 대신 특정한으로 하여금 자위단에 복무하도록 하거나⁶³⁾ 無給으로 위장한 채 급료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결국 주민들의 자위단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2) 街村稅(保甲費 포함)의 負擔實態

상술한 것처럼 실제로 유급 자위단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서, 가촌 예산 가운데 자위단 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경비 가운데에는 不正支出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적지 않은 街村稅(保甲費 포함)의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었다.⁶⁴⁾

그렇다면 실제로 街村稅(保甲費 포함)가 주민들의 稅金 가운데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자. <표-5>에 의하면 1937년도 「만주국」의 가촌 세입 세출 예산 가운데 街村稅(保甲公所費 포함)가 街村歲入豫算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촌 세출

62) 앞의 책 「滿洲國警察小史」, 100쪽. 이처럼 자위단원이 討伐作戰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례로서, 당시 항일 무장 투쟁에 참여하고 있던 어느 항일 유격대원은 자신의 日記 속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오늘 출현한 敵은 四道溝 밖 梨樹甸子の 自衛團이었는데, 그들은 부근의 농민의 가옥을 불태워버렸다”(『李敏煥日記片斷』, 1936년 6월 6일), 『黑龍江文史資料』 제13집(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4), 162쪽).

63) 위의 글 「海城縣に於ける農村行政組織と其の運營現態」, 98쪽.

64) 이와 관련된 사례들로서, 奉天省 海城縣에서는 1936년도 예산에 치안 경찰비가 18만 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예산액 이외에 그 액수의 78%에 해당하는 경비가 농민들로부터 별도로 징수되었다고 한다. 또한 同縣 同軍堡村의 경우 1936년도 예산 가운데 保甲關係經費는 전 세출의 12%인 1,604원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縣公署 당국자나 村公所 당국자의 얘기에 의하면, 실제로는 3,700원 이상의 경비가 사용되었다고 한다(위의 글 「海城縣に於ける農村行政組織と其の運營現態」, 104쪽).

예산 가운데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항목은 街村·保甲公所費, 警備費 그리고 教育費, 즉 縣立小學校(소위 保甲學校)運營費로서, 이것들이 각각 街村歲出豫算의 약 35.4%, 19.2%, 20.5%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사례로써 1937년도 奉天省의 村의 歲入總額 가운데 村稅가 차지한 비중은 약 86%⁶⁵⁾였고, 촌의 세출 총액 가운데 公所費, 保甲費 및 教育費가 차지한 비중은 각각 21.8%, 7.6%, 40.5%였다.⁶⁶⁾ 또한 동년도 安東省의 경우 전자의 비중은 약 97%⁶⁷⁾, 후자의 비중은 각각 22.6%, 18.4%, 10.9%였다.⁶⁸⁾

<표-5> 1937년도 「滿洲國」의 街村 歲入歲出豫算 稅目別 狀況

(단위:千円,%)

歲 入			歲 出		
歲 入 項 目	稅 入 額	百 分 比	歲 出 項 目	歲 出 額	百 分 比
街村稅(保甲費)	24,421	86.7	街村·保甲公所費	9,965	35.4
財 產 收 入	372	1.3	警 備 費	5,407	19.2
使用料 및 手數料	894	3.2	教 育 費	5,777	**20.5
補 助 金	783	2.8	土 木 費	1,702	6.0
寄 附 金	22	0.1	勸 業 費	736	2.6
移 越 金	581	2.0	衛 生 費	303	1.1
其 他	1,100	3.9	招 待 費	270	1.0
總 計	*28,176	100.0	豫 備 費	1,066	3.8
			其 他	2,945	10.4
			總 計	***28,176	100.0

<출전> 滿洲國 經濟部 稅務局 編, 『康德四年度街村(保甲)財政概要』에 의한다. 다

65) 田村敏雄, 『滿洲帝國經濟全集 5』(租稅篇 前篇)(新京, 東光書苑, 1938), 505쪽.

66) 위의 책 『滿洲帝國經濟全集 5』(租稅篇 前篇), 506쪽.

67) 위의 책 『滿洲帝國經濟全集 5』(租稅篇 前篇), 507쪽.

68) 위의 책 『滿洲帝國經濟全集 5』(租稅篇 前篇), 507-508쪽.

만 여기에서는 田村敏雄, 『滿洲帝國經濟全集 5』(租稅篇 前篇)(新京, 東光書苑, 1938), 504-505쪽에서 재 인용.

<비고> *는 28,173이어야 하고 **는 20.50이어야 하며, ***는 28,171이어야 하지만 원래대로 표기했다.

濱江省 阿城縣의 경우 公所費, 警察費⁶⁹⁾, 교육비의 비중은 각각 經常歲出總額의 21.3%, 46.9%, 21.3%였다.⁷⁰⁾ 그리고 1940년도 通化省 六道溝 保賢村의 경우, 村費의 정상 세입 가운데 村稅가 92.3%를 차지하고 있었다.⁷¹⁾ 이러한 보갑 재정의 항목별 구성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村政의 중심 업무가 村公所 및 自衛團의 維持와 保甲學校 運營이었다는 것이다.⁷²⁾

保甲公所費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保甲職員(保長·副保長·團總·副團總·保書記·甲長·副甲長·甲書記·甲敎員·團長·團員 등)에 대한 給料, 즉 人件費였다.⁷³⁾ 警備關係費用, 즉 治安費는 자위단의 운영비용

69) 참고적으로 濱江省 阿城縣 料甸子保와 正紅旗保內的 한 개의 甲을 뽑아서 歲出豫算 가운데 公所費의 內譯을 살펴보면, 공소비는 크게 ① 典禮費, ② 雜給(手當費, 傭人費), ③ 辦公費(車馬費, 旅費, 會議費, 備品費, 消耗費, 燃料費, 건물 임대비, 修繕費, 도서·인쇄비, 통신·운반비, 잡비)로 분류되고 있었다. 그리고 警備費 혹은 治安費는 自衛團費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車馬費·양식비·行動費·피복비·화약비·馬乾費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善生永助, 앞의 글 「濱江省阿城縣의保甲行政組織と其の運營狀態(完)」, 117-126쪽 참조).

70) 앞의 글 「濱江省阿城縣의保甲行政組織と其の運營狀態(完)」, 106쪽

71) 通化省公署 編, 『通化省農村實地行政事情報告書』(通化, 발행 연도 미상), 62쪽에서 산출. 그리고 村稅 가운데 地捐과 門牌費(혹은 戶別捐·門戶費라고도 불렀다)가 90%를 차지하고 있었다(위와 같음).

72) 앞의 글 「海城縣に於ける農村行政組織と其の運營現態」, 82쪽 참조.

73) 실제로 濱江省 阿城縣 料甸子保 및 同縣 正紅旗保의 경우 1937년도 保의 세출 예산 가운데 공소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전자에서는 公所費 2,434원 가운데 人件費가 1,674원으로서 68.8%를 차지하고 있었고(위의 글 「濱江省阿城縣의保甲行政組織と其の運營狀態(完)」, 118쪽에서 산출), 후자에서는 공소비 2,466원 가운데 인건비가 1,656원으로서 67.2%를 차지하고 있었다(위의 글 「濱江省阿城縣의保甲行政組織と其の運營狀態(完)」, 123쪽에서 산출). 그리고 阿城縣 料甸子保 南正紅旗甲 및 同縣 正紅旗保 白城甲의 경우 同年度 甲의 세출 예산 가운데 공소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전자에서는 공소비 1,065원 가운데 인건비가 696원으로서 65.4%를 차지하고 있었고(위의 글 「濱江省阿城縣의保甲行政組織と其の運營狀態(完)」, 120쪽에서 산출), 후자에서는 공소비 1,081원 가운데 인건비가 696원으로서 6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위

다.74)

보갑 공소비 및 치안 관계 비용은, 결국 일제가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확립하기 위해 조직한 보갑체도로 말미암아 보갑 주민들에게 요구 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제가 내부적으로는 보갑 주민들을 감시해서 보갑 주민들과 항일 유격대의 연계를 차단하고, 외부적으로는 自衛團을 편성해서 항일 유격대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한 保甲制度의 유지비를 보갑 주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파생되는 조세 부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제는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보갑 주민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이다.

村財政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教育費, 소위 보갑

의 글 「濱江省阿城縣의保甲行政組織と其の運營狀態(完)」, 125-126쪽에서 산출. 참고로 濱江省 阿城縣의 保甲職員들의 定員 및 俸給實態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38> 濱江省 阿城縣 保甲職員의 定員 및 俸給額數 現況(1937년)

(단위: 名, 元)

保 明	保 長	副 保 長	團 總	副 團 總	保 書 記	甲 長	副 甲 長	甲 書 記	甲 教 員	團 長	團 員
阿 城 保	1 35	1 20	1 22	1 18	3 19	6 15	6 8	6 16	4 16	6 13	50 9
料 甸 子 保	1 30	1 20	1 22	1 18	3 19	21 15	-	21 16	19 15	21 12	250 9
永 增 源 保	1 30	1 20	1 22	1 18	3 19	21 15	-	21 16	20 15	21 12	230 9
正 紅 旗 保	1 30	1 20	1 22	1 18	3 19	30 15	-	30 16	28 15	30 12	150 9
二 層 甸 子 保	1 30	1 20	1 22	1 18	3 19	9 15	-	9 16	6 15	9 12	150 9

<출전> 善生永助, 앞의 글 「濱江省阿城縣保甲行政組織其運營狀態(完)」, 128쪽.

<비고> 각 職給의 앞의 숫자는 定員을, 뒤의 숫자는 俸給額數를 의미한다.

74) 이와 관련하여 濱江省 阿城縣 料甸子保 및 同縣 正紅旗保의 1937년도 세출 예산에 의하면, 치안비는 자위단 운영비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치안 관계상 자위단 운영비의 내역이 공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가 없다(善生永助, 위의 글 「濱江省阿城縣의保甲行政組織と其の運營狀態(完)」, 117-127쪽 참조).

학교 운영비였다. 그렇다면 보갑학교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사례로 濱江省 阿城縣의 경우 보갑제도가 실시되면서 각 保甲에 보갑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들 보갑학교에서는 초급 소학교 정도의 과정을 2년 내지 3년 동안에 수료하도록 했다. 이 보갑학교는 대개 보갑 사무소의 일부를 校舍로 사용했고, 敎員은 대부분 사범 학교를 졸업했거나 교원의 경력이 있는 甲書記가 겸임했다. 학생은 7세부터 16세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보갑학교에서는 주로 학생들에게 일본어 및 日滿親善에 관한 思想을 鼓吹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었다.⁷⁵⁾ 이렇게 본다면, 보갑학교는 어린 학생들에게 일제의 식민 통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서 이들을 일제의 협력자로 양성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번에는 가촌세의 상대적인 비중을 가늠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몇 지방의 사례를 통해 가촌세의 비중을 국세 및 지방세와 비교해서 살펴보자. <표-6>에 의하면 街村稅(保甲費 포함)의 비중은 전체 세금 액수 가운데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국세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촌 예산의 거의 전부를 直接稅인 街村稅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가촌 주민의 조세 부담이 매우 컸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더욱이 1936년도 奉天省의 村稅 가운데 土地課稅가 차지한 비중을 살펴보면, 開原縣은 86.1%, 梨樹縣은 83.5%였다.⁷⁶⁾ 이처럼 다른 稅入源이 거의 없이 촌의 예산을 대부분 토지 과세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촌세의 대부분이 토지를 지닌 농민들에게서 徵收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갑 주민들의 조세 부담이 매우 컸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75) 위의 글 「濱江省阿城縣の保甲行政組織と其の運營狀態(一)」, 93쪽

76) 앞의 책 「滿洲帝國經濟全集 5」(租稅篇 前篇), 515-517쪽.

<표-6> 地方別 稅目別 百分比 및 1戶當 稅金額數 現況

(단위: %, 円)

稅目別	開原縣		鐵嶺縣		梨樹縣		呼蘭縣	
	百分比	1戶當額	百分比	1戶當額	百分比	1戶當額	百分比	1戶當額
國稅	39.9	10.28	39.3	10.46	35.9	7.69	40.9	13.89
縣稅	21.8	5.61	21.0	5.59	36.6	7.83	20.3	6.90
街村稅	37.3	9.60	39.7	10.58	25.7	5.51	38.7	13.12
農會費	1.0	0.24	-	-	1.8	0.18	-	-
計	100.0	25.73	100.0	26.63	100.0	21.21	100.0	33.91

<출전> 앞의 책 『滿洲帝國經濟全集 5』(租稅篇 前篇), 510-512쪽.

<비고> 국세는 1936년도 실적이고, 나머지는 1937년도 예산에 의한 것이다.

게다가 이같은 歲計는 팽창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濱江省 阿城縣의 경우 1937년도 예산은 1936년도의 그것에 비해 32.1% 증가하고 있었다.⁷⁷⁾ 이에 반해 1935년도 同縣의 농업 노동자의 임금은 1934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⁷⁸⁾ 따라서 이들 농업 노동자들이 짊어지는 조세 부담은 더욱 더 加重되었음에 틀림없다. 실제로 아성현에서의 보갑 행정 조직과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어느 일본인도 각 촌락에서의 보갑비 부담이 가볍지 않았음을 痛感하고 있었다.⁷⁹⁾

일반적으로 보갑비의 징수율은 甲長과 牌長이 협의해서 토지의 多寡에 따라 결정했다. 실례로 安東省 莊河縣의 경우, 소유지 면적 혹은

77) 앞의 글 「濱江省阿城縣의保甲行政組織と其의運營狀態(完)」, 105쪽의 '阿城縣豫算比較表'에서 산출.

78) 위의 글 「濱江省阿城縣의保甲行政組織と其의運營狀態(一)」, 67쪽의 農業勞工賃銀表. 이표에 의하면 年工의 보통 임금이 1934년에 85원이었는데 1935년도에는 80원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月工의 보통 임금은 동시기에 9원에서 8원으로, 日工의 보통 임금은 동시기에 7角에서 6角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79) 위의 글 「濱江省阿城縣의保甲行政組織と其의運營狀態(完)」, 109쪽.

경작지 면적의 규모에 따라 農家를 甲·乙·丙·丁·戊의 5등급으로 분류한 뒤, 그 등급에 따라 보갑비를 할당했다(<표-7> 참조). 그런데 보갑 직원들은 자주 不正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깊어갔다.⁸⁰⁾ 특히 경찰서장의 세력은 당시 농촌에서 가장 컸기 때문에, 甲長 등은 경찰서장이나 경찰서원들과의 개인적인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接待·響應 등에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았다.⁸¹⁾

<표-7> 安東省 莊河縣에서의 保甲費 割當基準(1935.10.1-12.30)

等 級	甲	乙	丙	丁	戊
所有地(혹은 耕作地)面積別 割 當 額	200-60畝 0.60圓	60-40 0.40	40-10 0.30	10-1 0.15	無所有 0.05

<출전> 滿洲國 國務院 實業部 臨時產業調查局 編, 『農村實態調查一般調查報告書』(新京, 同調查局, 1936), 323쪽 및 331쪽.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接待費 및 響應費는 모두 보갑민들에게 전가되었던 것이다. 보갑 주민들은 상술한 각종 부담 이외에 賦役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집단부락을 건설하거나 保甲(警備)道路를 開通할 경우에는 賦役負擔이 한층 증가되었다.⁸²⁾ 이때 賦役⁸³⁾ 및 徵發 등은 모두 保·甲長을 통해서 행해졌다. 또한 보갑 주민들은 군대나 경찰대 등을 宿泊시켜 주어야 할 때도 많았다. 그들의 숙박 문제는 甲長이나

80)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奉天省 海城縣에서는 보갑 직원들의 부정한 經理가 발각되어 보갑 직원과 농민 사이의 항쟁이 격화하고 있었다(앞의 글 「海城縣に於ける農村行政組織と其の運營現態」, 68-69쪽 참조).

81) 앞의 농촌 실태 조사 보고서 『農村社會生活篇 ---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 ---』(産調資料45-9), 157쪽.

82) 앞의 글 「濱江省阿城縣の保甲行政組織と其の運營狀態(完)」, 109쪽.

83) 濱江省 海倫縣 後三馬架屯에서는 甲長과 牌長이 협의해서 소유 면적에 따라 賦役의 비율을 정했다(위의 농촌 실태 조사 보고서 『農村社會生活篇 ---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 ---』(産調資料45-9), 164쪽).

牌長 이외에 屯의 有力者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알선되었다.⁸⁴⁾ 이처럼 보갑 주민들은 村費의 過多徵收, 村費使用의 紊亂, 接待費의 過多, 그리고 각종 賦役 등의 諸負擔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⁸⁵⁾ 결국 보·갑·패장은 일제의 치안숙정공작의 最一線에 서서 정치적으로는 같은 보갑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감시·감독하였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일제의 치안숙정공작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급하는 병참 기지의 실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갑민들은 보갑제도를 ‘단지 自衛團의 일일뿐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제도로서, 徵稅하거나 賦役을 강요하는 실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保·甲·牌長 역시 이들 보갑민들에게 “村公所의 심부름꾼”과 같은 존재로 비쳐졌다.⁸⁶⁾ 또한 행정 당국으로부터 오랫동안 苛斂誅求만을 받아왔던 만주 농민들은 행정 당국을 不信하고 있었다. 그래서 縣公署의 직원이 屯에 왔다는 말을 들으면, 여자들은 방안으로 들어간 뒤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밀지 않았다고 한다.⁸⁷⁾

84) 위의 농촌 실태 조사 보고서 『農村社會生活篇 ---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 ---』(産調資料45-9), 158쪽.

85) 앞의 책 『滿洲國軍』, 365쪽 참조. 실례로 通化省 六道溝 保賢村의 경우, 1939년도에 부락민들에게 부과된 각종 雜費의 내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屯長 봉급 보조금 1개월당 15원, 부락 수선비 550원, 학교 연료비 578원, 철도 경호에 종사하는 둔민 1명에 대한 월급여 20원, 縣公署의 명령에 의해 濛江縣의 경비 도로 수선에 종사하는 둔민 6명에 대한 보수 360원(40일분), 몽강현의 비적 토벌에 관여하고 있는 9명에 대한 보수 414원, 토벌대의 주둔에 따른 副食物과 日用品의 부담 등이 있었다. 또한 이 부락에서는 1인당 연간 100일 이상의 賦役이 부과되었다고 한다(通化省公署 編, 앞의 보고서 『通化省農村實態行政事情報告書』, 65-66쪽).

86) 앞의 조사 보고서 『農村實態調查一般調查報告書 --- 安東省 莊河縣 ---』, 333쪽 참조.

87) 위의 조사 보고서 『農村實態調查一般調查報告書 --- 安東省 莊河縣 ---』, 336쪽 참조.

(3) 戶口調查實態

「만주국」이 건립된 뒤 일제는 항일 유격대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1934년 2월 7일 「民政部訓令 제106호」로서 「戶口調查規程」을 제정하여⁸⁸⁾ 본격적으로 戶口調查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호구 조사를 통해 농민들의 항일 유격대화(소위 匪化)를 예방하고, 항일 유격대의 잠입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匪民分離”를 철저히 하려고 했던 것이다. 89) 그런데 당시 호구 조사의 전담 기관이었던 경찰의 능력만으로는 완벽한 호구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일제는 1933년 12월 22일 「敎令 제96호」로서 「暫行保甲法」를 제정하고, 보갑제도로 하여금 경찰의 호구 조사 업무를 보조하도록 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일제는 1937년 12월 28일 「治安部令 제60호」를 통해 「暫行戶口屆出規則」을 제정한 뒤, 주민들로 하여금 거주 및 이동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90)

원칙적으로 戶口調查는 6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하도록 했으며, 특히 要注意者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했다. 그리고 해당 甲·牌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그 甲·牌 내의 주민을 찾아왔을 경우에는 곧 경찰에 알리도록 했으며, 縣·區·村公署 및 경찰서에서는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에 대해 檢束과 取調를 행하고, 容疑者에 대해서는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했다.⁹¹⁾ 또한 보갑제도 내의 주민들은 집집마다 大門에 家長의 姓名, 家族數, 同居人數, 使用人數 등을 명기한 門牌를 달아야 했다.⁹²⁾ 이러한 문패를 통해 각 장들은 호구 조사의

88) 앞의 책 『滿洲國警察史』上卷, 405쪽.

89) 앞의 책 『滿洲國警察史』上卷, 406쪽 및 滿洲國 民政部 資料科 編, 『滿洲國民政年報』(1934년판)(新京, 同資料科, 1933), 368쪽 참조.

90) 위와 같다.

91) 滿洲國 民政部 警務司, 「戶口調查指針」(1934년 9월) 戶口調查規程 제3조 참조 (여기에서는 角張繁, 「東邊道に於ける匪賊の動向」, 大亞細亞日本青年團 編, 『第一回滿洲研究團報告』(東京, 同聯盟, 1935), 235쪽에서 인용).

철저화뿐만 아니라, 보갑 내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방문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상호간의 이동 및 방문자의 행동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또한 各甲으로 하여금 戶口調查簿 2부를 작성하게 한 뒤, 한 부는 각 갑에서 보관하게 하고 다른 한 부는 경찰서에 제출해서 경찰의 호구 조사시 참고하도록 했다.⁹³⁾ 즉 호구 조사부를 戶籍簿의 代用으로 삼아 住民의 良否, 항일 유격대와의 內通有無를 판단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不良分子(反日分子)의 出入을 발견하거나 예방하고자 했던 것이다.⁹⁴⁾ 특히 농번기에는 많은 日工(즉 日傭勞動者)들이 屯을 출입했는데, 이때에는 상호간의 경계와 감시를 강화했다. 또한 農家가 이동할 때에는 轉出屯과 轉入屯이 서로 상대屯에게 신고를 했으며, 전입둔에서는 누군가가 그 전입해오는 농가에 대한 보증을 서야 했다.⁹⁵⁾ 그리고 旅行者·移住者·來住者는 반드시 縣內에서 保·甲長의 증명서를 휴대하고 다니도록 했다.⁹⁶⁾ 또한 경찰서마다 「一齊戶口調查班」을 편성하고, 각 반마다 책임 지역을 분담하게 한 뒤 정보를 수집하거나 容疑者·通匪者·잠복한 항일 유격대원을 색출·검거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려고 했다.⁹⁷⁾

특히 奉天省에서는 호수 및 인구의 증감과 이동을 조사해서 주민의 性行 및 생활 상태 등을 사찰·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구 조사에 관한 사무를 종래의 警備科에서 司法科로 이관시키면서 그 업무를 강화했다.⁹⁸⁾ 이에 따라 同省 金川縣에서는 중점적인 치안 공작 대상 지

92) 「暫行保甲法施行規則」 제9조.

93) 앞의 보고서 「東邊道治安工作委員會と宣撫工作」, 93-94쪽.

94) 위의 보고서 「東邊道治安工作委員會と宣撫工作」, 92쪽.

95) 앞의 농촌 실태 조사 보고서 「農村社會生活篇 ---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 ---」(産調資料45-9), 156쪽 및 165쪽.

96) 앞의 책 「省政彙覽 第6輯 --- 間島省篇 ---」, 324쪽.

97) 앞의 책 「省政彙覽 第7輯 --- 安東省篇 ---」, 318쪽.

98) 앞의 책 「滿洲國警察概要」, 532쪽.

역을 特別戶口調查部落으로 지정한 뒤 固定特別調查班을 편성해서 不在者·行方不明者·出稼者·여행자·新居住者 등에 대해 필요한 조항을 조사하면서 잠복한 항일 유격대원을 색출하려고 했다.⁹⁹⁾ 濱江省 海倫縣 後三馬架屯에서는 문패를 배포하고 문패비를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호구 조사를 도와줄 書記 한 명을 하루 동안 고용한 뒤, 그 고용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족수 한 명당 1錢씩을 징수하기도 했다.¹⁰⁰⁾

상술한 것처럼 일제 치안 당국은 保·甲·牌內에서 단순한 戶口調查의 차원을 넘어서 주민들에게 良民證·旅行證明書·移轉證明書¹⁰¹⁾ 등을 발급하거나 出生·死亡 혹은 婚姻·養子 등과 같은 家族上의 變動事項 등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戶籍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제는 保·甲·牌內의 주민에 대한 통제 체제를 더욱 더 강화해서 주민들과 항일 유격대와의 연계를 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4) 民間人 銃器·彈藥의 回收實態

일본의 만주 침공 이전까지 만주 각 지역의 민간인 사회에서는, 많은 총기류가 유포되면서 민간인 가운데에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이 많았다. 이처럼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총기류를 구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 기원은 대체로 同治元年(1862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치 원년경에는 採金匪·人蔘匪 등의 무리가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 비적 가운데 커다란 집단은 수백 명을 헤아리기까지 했다. 이들 비적 집단은 자신들의 收入源인 鑛區 혹은 採蔘地域을 침범하려는 세력이나 그곳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官憲에 대한 自衛用으로서 각자 무기를 갖추고 있었다. 그 후 罌粟(양귀비)의 재배

99) 앞의 보고서 「東邊道治安工作委員會と宣撫工作」, 93쪽.

100) 위의 농촌 실태 조사 보고서 「農村社會生活篇 ---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 ---」(産調資料45-9), 164쪽.

101)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겠다.

가 유행하면서 앵속을 비밀리에 재배하고 있던 산림 지대의 煙匪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자위용 무기가 증가하게 되었다.¹⁰²⁾

光緒 8년(1882년)경부터는 비적 집단들이 창궐하게 되자, 이들에 대항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반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銃器購入의 열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光緒 21년(1895년)경에는 외국으로부터 주로 소총과 권총이 구입되기 시작했고, 광서 30년(1904년) 이후에는 관헌의 손을 통해 외국의 여러 나라로부터 대량의 무기가 구입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32년에는 이들 총기류가 130만 정으로 추산되었고,¹⁰³⁾ 그 후 총기류의 구입이 늘어나면서 민간 사회에 은닉된 총기류는 다시 약 250만 정으로 추정되었다.¹⁰⁴⁾

당시 중국에서는 비적이나 大盜들이 창궐하고 있었지만, 군경은 이들을 진압할 능력이 없었다. 그 때문에 인민들은 자위를 위해 총을 구매해서 戶와 戶, 혹은 屯과 屯이 연합해서 공동 방어를 하기 시작했다.¹⁰⁵⁾ 이를 계기로 일반 민간인 사회에서는 자위용 무기를 갖춘 자치 방위 조직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자위 조직 또는 일반 민중들 가운데 비적 집단에 투신한 자나 무기를 비적에게 탈취당한 자 등이 많았기 때문에, 점차 匪民을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중국 특유의 馬賊이 출현하면서 치안 질서가 어지럽혀졌다.¹⁰⁶⁾

이와같은 상황에서 「만주국」 國務院에서는 민간인들의 抗日武裝勢力化 혹은 민간 무기의 항일 유격대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反滿抗日遊擊隊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民間에 산재해 있는

102) 앞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400쪽 참조.

103) 앞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400-401쪽 참조.

104) 滿洲國軍刊行委員會 編, 『滿洲國軍』(東京, 蘭星會, 1970), 179쪽.

105) 曾憲紘, 『收繳民槍』, 孫邦 主編, 于海鷹·李少伯 副主編, 偽滿史料叢書 『植民政權』(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93), 364쪽.

106) 위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400-401쪽 참조.

무기들을 회수하려고 했다.¹⁰⁷⁾ 그리하여 국무원에서는 1932년에 武器買上費를 計上하고, 「清鄉委員會」를 통해 시험적으로 일부의 省에서 무기를 회수하도록 했다.¹⁰⁸⁾

그런데 만주 각지의 민간인 사회에서는 총기 보유의 관습이 오래되었고 총기가 自家防備上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일반인 사이에서는 총기 회수에 대한 불평이 대단했으며, 일부에서는 이들 총기를 세습 재산으로 간주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반만 항일 세력에게 매각 또는 제공했다. 또한 상당한 識者들 사이에서조차도 무기의 회수가 민간인의 자위력을 감소시켜 치안상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었다.¹⁰⁹⁾

위와같은 분위기 속에서 武器買上實績이 좋지 않자, 국무원에서는 1933년 5월 「民政部令 제6호」를 통해 「暫行銃砲取締規則」을 제정한 뒤, 동년 6월 「治安維持會」의 창설과 동시에 민간에 산재해 있는 무기에 대한 조사 및 회수를 강행했다.¹¹⁰⁾ 게다가 「만주국」 치안유지회에서는 항일 유격대가 軍警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買收하는 것을 방

107) 위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401쪽 참조.

108) 참고로 이때 회수된 무기의 표준 가격은 <표-8>과 같다.

<표-8> 回收된 武器의 標準價格

銃 砲 類	甲	乙	丙	丁
小 銃	10圓 以內	8원 以內	6원 以內	
券 銃	12 "	10 "	8 "	
機關銃砲	50 "			
洋 砲	1 "			

<출전> 滿洲國民政部 編, 『民政年報』(新京, 同民政部, 1936), 145쪽.

<비고> 甲은 신품과 다름없는 것, 乙은 조금 사용한 것, 丙은 機能이 舊形인 것, 丁은 기타를 말한다.

109) 위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401쪽.

110) 위와 같다.

지하기 위해, 군경에 대한 탄약의 휴대량을 엄격히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군경으로부터의 탄약 보충 요청을 엄격하게 심사한 뒤 이를 허가했다. 당시 항일 유격대는 군경으로부터 대부분의 탄약을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안유지회에서는 군경의 휴대 탄약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¹¹¹⁾

그렇지만 일제 치안 당국자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무기 회수 공작이 만주 민간인 사회에 反國家的 혹은 反日的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무기 회수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일제는 하나의 편법으로써, 일단 무기를 회수해서 등기한 뒤 다시 민간인들에게 대여하는 형식, 소위 '領置'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¹¹²⁾ 이것은 사실상 강제 몰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¹¹³⁾ 또 하나의 방법으로써, 일제는 무기 회수 공작과 관련된 선전 공작을 추진했다. 예를 들면, 協和會는 각 鄉村에 다수의 공작원을 파견하여 농민들에게 "현재의 政府軍警은 인민들을 보위할 능력이 있어서 군벌 시대처럼 胡匪들이 결코 도처에서 跋扈하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무기를 가지고 자위할 필요가 없다!"¹¹⁴⁾라는 선전 공작을 통해 무기를 회수하려고 애썼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日滿軍警의 治安力이 농촌에까지 침투하면서 무기·탄약의 회수 공작은 점차 실적을 거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1934년말까지 총기는 有償 49만 8,203정, 無償 14만 5,190정으로 합계 64만 3,393정이 회수되었고, 탄약은 유상 342만 7,274발, 무상 523만 3,192발로 합계 866만 466발이 회수되었다. 1935년 1월 4일에는 民政部 警務司에 司法科(후에 警備科, 警防科로 개칭됨)가 신

111) 앞의 책 『滿洲國軍』, 179쪽 참조.

112) 각주 151)과 같다.

113) 위의 책 『滿洲國軍』, 179쪽.

114) 「黃富俊筆供」(1951년 9월), 앞의 자료집 『偽滿傀儡政權』, 651쪽.

설되면서, 사법과가 치안유지회의 주재 하에 무기·탄약 회수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은닉된 총기 및 탄약에 대한 회수 공작이 강화되면서 1935년말까지 회수된 총기가 98만 1,165정, 회수된 탄약이 996만 6,296발에 달하였으며, 이들 총기 및 탄약을 회수하는데 사용된 경비는 148만여 원에 달했다.¹¹⁵⁾

더 나아가 1936년 6월에 만주 치안 당국은 '勅令 제84호'를 통해 「銃砲取締法」을 제정·공포하는 동시에, 民政部·軍政部の 共同部令으로서 「銃砲取締法施行規則」을 제정·공포했다. 그리고 치안 당국은 이들 법률들에 銃砲의 제조·판매·修繕·輸出·讓渡·所持·운반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설정한 뒤, 총포를 부정하게 授受·운반할 여지를 없애 버렸으며, 이 법률들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동시에 해당 총포의 假領置 및 官에서의 沒收處分을 명기함으로써 총포·탄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그런데 종래 회수된 무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洋砲¹¹⁶⁾는, 공격 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무기를 수송하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1937년도에는 치안유지회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양포의 회수 공작을 중지시켰다.¹¹⁷⁾ 1937년말까지 회수된 총기는 150만 정에 달했다.¹¹⁸⁾

한편 1938년 3월 종래의 치안유지회가 폐지되면서 총기·탄약의 회수 공작은 모두 경찰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그에 따라 동년 4월 총기·탄약의 회수 규정이 개정되어, 회수에 관한 사무는 「만주국」 治安部大

115) 앞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402쪽.

116) 한편 일제 치안 당국은 1937년 8월 東邊道 일대에 대한 대토벌로 인해 이곳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항일 유격대들이 三江省에 집결하게 되자, 이 지역에 집단부락을 결성하는 동시에, 종래에 방어용으로서 회수한 大洋砲 및 小洋砲 1만 정을 삼강성으로 보내 치안숙정공작을 강화하도록 했다(위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402쪽).

117) 위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402쪽.

118) 위와 같다.

臣의 관리 하에 지방 경찰 기관이 맡도록 했다. 또한 買上 單價額도 개정되었고 洋砲도 다시 회수되기 시작했다.¹¹⁹⁾

총기 및 탄약의 회수 공작과 관련해서, 安東省에서는 保·甲長을 책임자로 하고 경찰서장의 감독 하에 총기에 대한 조사와 주민들의 총기 등록을 독려했다. 또한 同省에서는 총기의 有償回收時 가격은 주민들의 총기에 대한 관념도 고려해서 결정했다. 그리고 경찰관이 직접 총기를 회수할 경우 주민들 사이에 도리어 隱匿 분위기를 조성했거나 주민들의 혐오감을 초래했던 前例에 비추어, 총기 회수는 보·갑장이 직접 회수했다. 이와 아울러 상금의 지급과 密告制度를 채택했다. 특히 토벌 공작이 진행되면서 항일 유격대원 가운데 도망하거나 귀순하는 자들이 속출할 경우, 그들 자신이 소지했던 총기를 은닉하는 경향이 강했던 전례에 비추어, 검문·검색은 잠복한 항일 유격대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은닉한 총기에 대해서도 했다. 이때 총기의 은닉 장소는 대부분 棺 속, 墓地 속, 塹나무 속, 野菜貯藏庫 속, 기와 속, 積草 속 등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검색에 주의를 기울였다.¹²⁰⁾ 奉天省에서는 총기 은닉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고 위협함으로써, 혹은 銃器密告者에 대해서는 총기 회수액의 범위 내에서 褒賞¹²¹⁾는 등의 수단을 통해 총기 및 탄약의 회수 공작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三江省에서는 「憲兵特別工作班」(소위 「田中特別工作班」¹²²⁾)

119) 위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403쪽.

120) 앞의 보고서 「東邊道治安工作委員會と宣撫工作」, 95-96쪽.

121) 앞의 책 『省政彙覽 第8輯 --- 奉天省篇 ---』, 602-603쪽 및 위의 보고서 「東邊道治安工作委員會と宣撫工作」, 94쪽.

122) 이 공작반의 조직과 관련해서, 당시 만주국 新京 憲兵訓練處 學生連 소속이었던 田中三治에 대한 調書 내용에 의하면, 1938년 6월초 治安部 軍事顧問部에서는 憲兵訓練處長 應振復에게 명령을 내려 三江警備司令部로 현병훈련처 군사 학생 16명과 현병 장교 3명 등 모두 19명을 파견해서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지구로 출동시킨 뒤 치안숙정공작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한다(『田中三治口供』(1954.7.30), 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合編, 『東北大討伐』(北京, 中華書局, 1991),

이 동북항일연군 捕虜 및 동북항일연군 출신 歸順者, 그리고 동북항일연군과 관계 있는 주민들을 협박해서 주민들의 총기 은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총기 은닉 혐의자들을 체포해서 毆打와 拷問을 가한 뒤 총기와 탄약을 몰수했다. 이때 체포되어 구타와 고문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자도 있었다.¹²³⁾

상술한 것과 같은 만주 각지에서의 총기 및 탄약의 회수 공작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38년부터 1940년까지 만주 각지에서 회수된 총기 및 탄약의 회수 실적을 살펴보면, 1938년도에 회수된 총기가 22만 1,161정(그 가운데 방어용 무기인 洋砲는 19만 8,084정), 회수된 탄약이 118만 1,865발에 달했고, 1939년도에 전자는 14만 3,047정(그 가운데 양포는 11만 2,364정), 후자는 75만 1,259발에 달했으며, 1940년도에 전자는 10만 8,577정(그 가운데 양포는 9만 2,212정), 후자는 52만 9,987발에 달했다.¹²⁴⁾

상술한 무기 및 탄약에 대한 회수 공작은 치안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상술한 佐佐木到一의 手記에서

총기 몰수와 彈藥饑饉의 方策은 착착 그 효과를 나타내어 1936년말에는 180만挺의 총기를 압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비적에게는 대단한 탄약 기근 현상이 초래되어 소총 탄약 한 발이 최고 75錢까지 폭동하기도 했다(당시 계란 한 개의 값이 1전이였다). 海上으로부터 정크로 밀수입되던 무기도 海邊警察隊에 의해 엄중하게 단속되었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 들어오는 길밖에는 밀수입의 길이 없어지게 되었다.¹²⁵⁾

407쪽).

123) 『田中三治口供』(1954.7.30), 위의 자료집 『東北大討伐』, 407쪽.

124) 앞의 책 『滿洲國警察史』, 上卷, 826-827쪽.

라고 기술되어 있었듯이, 일제의 무기 및 탄약에 대한 회수 공작으로 항일 유격대는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곤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일 유격대의 무장 투쟁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3. 保甲制度의 矛盾과 街村制로의 移行

보갑제도가 「만주국」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보갑제도를 통해서 행해진 民間人 銃器 및 彈藥의 回收工作은 1937년말까지 150만정에 달했다. 그리고 보갑제도와 동시에 시행된 保甲道路의 정비, 保甲電話의 보급 등으로 縣公署와 농촌 사이의 연락이 용이해진 결과, 日滿軍警의 出動時間이 훨씬 단축되었다.¹²⁶⁾

보갑제도의 운영상의 특징은 連坐罰金制度의 採用 및 戶口調査를 통한 住民의 日常生活과 移動의 철저한 監視, 그리고 自衛團의 組織이라고 할 수 있다. 연좌 벌금 제도와 관련하여, 牌의 주민 가운데 內亂罪, 外患罪, 公共危險罪, ‘暫行懲治叛徒法’에 규정된 죄, ‘暫行懲治盜匪法’에 규정한 죄, ‘暫行銃砲取締規則’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는 경찰서장은 각 牌에 대해 2원 이하의 連坐罰金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長들은 牌內의 각 家長으로 하여금 連坐責任을 짚어지게 하고 連坐罰金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官에 발각되기 이전에 牌의 주민 가운데 이 사실을 제보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 자가 있을 때 혹은 이 사실이 官에 발각되기 이전에 犯人 자신이 自首할 때에는, 연좌 벌금의 輕減 또는 免除 조치가 취해질 수 있

125) 앞의 책 「滿洲國軍」, 179-180쪽. 실례로 간도성에서는 1935년 11월 「火藥類取締法令」이 공포되면서 화약류의 자유로운 輸入方途가 두절되었다(앞의 책 「省政叢覽 第6輯 --- 間島省篇 ---」, 286쪽).

126) 앞의 글, 「濱江省阿城縣의 保甲行政組織と其의 運營狀態(一)」, 95쪽 참조.

게 했다.¹²⁷⁾ 이처럼 일제는 보갑제도를 통해 농민 상호간의 감시 체제를 구축해서 주민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했을 뿐만 아니라, 감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連坐法'을 실시하였던 것이다.¹²⁸⁾

요컨대 보갑제도는 상술한 것처럼 엄격한 保甲 連坐法の 採用과 戶口調査를 통해 항일 유격대에 동조적인 자의 이동 상황을 추적하여 이들의 遊擊隊化(소위 匪化)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¹²⁹⁾ 武器를 回收해서 항일 유격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일제는 보갑제도 안에 自衛團을 조직하여 경찰 기관의 보조 세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렇게 본다면 보갑제도는 「만주국」의 치안 확립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취해진, 항일 유격대를 대상으로 한 暫定的인 民間警察制度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던 것이다.¹³⁰⁾

그러나 보갑제도는 여러가지 矛盾을 내포하고 있었다. 보갑제도의 첫번째 모순은, 대부분의 자위단이 無給의 義務自衛團員으로 구성되었음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有給의 자위단원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자위단의 운영비가 街村 세출 예산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자위단원에 대한 급여 지출이 保甲財政을 압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부담을 증대반복시켰다는 점이다. 결국 자위단의 존재는 농민, 특히 貧農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짐을 지웠던 것이다. 더욱이 자위단원 가운데에는 “주민을 협박해서 제도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는 자”¹³¹⁾들이 속출했기 때문에,

127) 「暫行保甲法」 제9조.

128) 류병호, 「중국조선족이주개관」(중국조선족청년학회 편, 「中國朝鮮族移民實錄」(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92)), 339쪽.

129) 앞의 책 『滿洲國史』(總論), 330쪽.

130) 滿洲國 治安部 參謀司 編, 『國內匪賊と治安對策』(新京, 同參謀司, 1938), 152쪽.

131) 앞의 공작 보고서 『保甲制度特別工作概況』, 84쪽 및 앞의 책 『保甲制度論』, 53쪽.

보갑제도의 根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위단의 존재는 농민들에게 여러가지 弊害를 끼쳤던 것이다.

보갑제도의 두번째 모순은 보갑제도가 강화되면서 保甲職員들과 농민들 사이의 대립이 顯在化되고 있었다는 점이다.¹³²⁾ 전술한 것처럼 보갑 직원의 선출은 보갑 주민의 互選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실제로 선출된 보갑 직원들은 보갑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警察機關의 意志를 반영하고 있던 舊支配層이었다. 이들 보갑 직원들은 보갑민들에 대한 監視·徵稅·賦役動員 등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주 不正을 저질렀기 때문에, 보갑 직원 및 보갑제도 자체에 대한 농민들의 不信은 점점 깊어져 갔다. 이러한 와중에서 보갑제도는 점차 土豪劣紳의 社會·경제적 기초를 보강해 주는 機構로 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貧農層에 대한 낡은 봉건적 지배를 유지·강화시켜 주는 하나의 기관으로 변질되었다.¹³³⁾

보갑제도의 세번째 모순은, 保甲의 區劃이 농민들의 실제 생활이나 社會·경제적인 관습 등을 고려하지 않고 戶數關係上 임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¹³⁴⁾, 농민들에게 생활상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만주 농촌에서는 自然發生的인 部落이 농민 생활의 場으로서 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런데 法規에 따라 形式的으로 조직된 保·甲·牌의 조직은 보갑 주민들의 생활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던 社會와 꼭 들어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전통 社會 자체를 파괴시켜 버렸던 것이다.¹³⁵⁾ 예를 들면 濱江省 靑岡縣과 海倫縣 등에서는 하나

132) 앞의 글 「農村行政支配」, 267쪽.

133) 위의 글 「農村行政支配」, 267쪽.

134) 만주에서의 保는 대부분 警察管轄區와 일치시켜서 구획되었다(「앞의 농촌 실태 조사 보고서 『農村社會生活篇 ---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 ---』(産調資料 45-9), 152쪽).

135) 民政部 總務司 資料科, 앞의 글 「保甲制度を中心とする諸問題(一)」, 91쪽.

의 자연 부락이 두 개의 다른 甲에 속한 곳이 많았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A屯과 관계가 밀접한데도 B屯과 함께 하나의 甲에 속한 곳이 대단히 많았다. 이러한 경우 농민들은 커다란 不便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屯에서도 村費가 달랐고, 會舍 등도 따로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¹³⁶⁾ 또한 間島省 延吉縣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듯이, 보갑제도가 형식적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어떤 甲에 편성된 호수는 2,500여 호나 되는 등 그 구역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다.¹³⁷⁾

위와 같은 보갑제도 자체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만주국」 民政部는 1936년에 각 省長에게 訓令을 발포하여 국가의 정치·행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래를 위해 街村制를 제정하고 운영조건을 세운 뒤, 民政部大臣의 허가를 얻어 暫行街村制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¹³⁸⁾ 이에 따라 1937년 12월에 치안이 확립된 奉天·安東·錦州·熱河·間島·龍江의 각 省 전지역 및 吉林·濱江·三江·목단江의 각 성의 일부 지역에 대해 ‘街制’¹³⁹⁾(칙령 제412호)를, 그리고 치안이 확립된 村에 대해서도 同年 12월 ‘村制’¹⁴⁰⁾(칙령 제415호)를 공포하고 소위 ‘街村制’¹⁴¹⁾를 실시하기 시작했다.¹⁴²⁾ 가촌제가 실시된 지구에서는 법령의 적용 범위 내에서 自治가 허용되어 暫行保甲法이 적용되지 않

136) 앞의 농촌 실태 조사 보고서 『農村社會生活篇 --- 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 ---』(産調資料 45-9), 151-152쪽.

137)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情報處 編, 『省政彙覽 第6輯 --- 間島省篇 ---』(新京, 同情報處, 1936), 324쪽.

138) 「一九三七年實行街村制」, 앞의 자료집 『偽滿傀儡政權』, 501쪽.

139) 街制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街制」(1937년 12월 1일, 勅令 제412호), 위의 자료집 『偽滿傀儡政權』, 503-510쪽을 참조하라.

140) 村制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村制」(1937년 12월 1일, 勅令 제415호), 위의 자료집 『偽滿傀儡政權』, 510-517쪽을 참조하라.

141) 街村制, 즉 鄉村制度에 관해서는 앞의 글 「滿洲現農村自治制度の若干の考察」, 187-197쪽을 참조하라.

142) 앞의 책 『滿洲國警察小史』, 101-102쪽.

도록 되어 있었다.¹⁴³⁾ 가촌제는 民族協和의 自治團體를 基調로 삼았으며, 大街·大村主義 原則을 취했다. 街는 市의 都邑에 準했으며, 村은 농촌의 여러 부락을 결합시킨 것으로 農촌에 적용되었다.¹⁴⁴⁾ 街村은 모두 法人으로서 官府의 監督을 받았는데, 제1차로 縣長, 제2차로 省長, 제3차로 國務總理大臣의 감독을 받았다.¹⁴⁵⁾ 가촌제가 실시됨에 따라 '縣 → 保 → 甲 → 屯 → 牌 → 農家'라는 보갑제도 하에서의 農村治安行政機構는 '縣 → 村 → 屯 → 牌 → 農家'로 재편되었다.¹⁴⁶⁾

결국 가촌제가 실시된 목적은, 행정과 경제를 융합시키기 위해 지방 단체와 산업 조합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이 양자의 관할 지구를 가능한 한 일치시켜서 행정 기구의 단일화를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과 경제가 상호 遊離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를 위해 街村과 保甲의 竝立을 배제하고 가촌의 정비에 따라 점차 보갑을 가촌에 흡수하려고 했던 것이다.¹⁴⁷⁾ 그렇지만 좀더 근본적인 목적은 보갑제도가 띠고 있던 농촌의 자치적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고, 街村·長 및 街村의 주요 간부들을 현에서 직접 임명해서 가촌을 縣의 직접적 관할 하에 들으로써, 基層統治機構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한 것이었다.¹⁴⁸⁾ 이것은 街村育成의 목적이 "국가 행정의 침투를 第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43) 위와 같다.

144) 앞의 글 「一九三七年起實行街村制」, 501쪽; 「街村制度確立基本要綱」(1937년 12월 1일), 앞의 자료집 『偽滿傀儡政權』, 502쪽; 滿洲國 國務院 弘報處 編, 『街村制度快覽』(新京, 滿洲國通信社, 1938), 13쪽 참조.

145) 앞의 책 『滿洲國史』(各論) 上卷, 298쪽.

146) 吉林省 開拓廳 農林科 編, 『農村實態調查報告書 --- 康德五年度 夫餘縣四家子屯 ---』(1940), 285쪽.

147) 滿鐵產業部 編, 『滿洲經濟年報』(昭和12年度) 下卷(東京, 改造社, 1937), 177-178쪽 및 「實行街村制度的目的是使行政機構單一化」, 위의 자료집 『偽滿傀儡政權』, 503쪽.

148) 「黃富俊口供」(1954년 8월 21일), 위의 자료집 『偽滿傀儡政權』, 518쪽 참조.

도 입증되고 있었다.¹⁴⁹⁾

그렇다면 여러가지 모순들을 내포하고 있던 보갑제도가 발전적으로 해제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街村制는, 종래의 보갑제도와 어떠한 差別性을 지니고 있었고 그 실태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선 상술한 보갑제도의 첫번째 모순, 즉 有給自衛團의 편성과 그에 따른 保甲財政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는 1937년 12월 23일 「市街村自衛法」(칙령 제460호)을 제정하고 유급제 자위단을 무급제 자위단으로 개조하도록 지시했다.¹⁵⁰⁾ 가촌제 하에서 자위단의 無給制化는 中日戰爭과 더불어 조성된 戰時體制 하에서의 民衆動員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일제의 의도도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¹⁵¹⁾ 또한 자위단의 무급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만주국」 內務局¹⁵²⁾은 1938년 5월 4일 「有給自衛團 整理에 관한 通牒」을 발령하여 街村民에 의한 義務制 自衛團의 창설을 각 縣·旗·省長에 지시했다.¹⁵³⁾ 이를 계기로 1937년말에 5만 명으로 추산되던 유급 자위단원은 1940년도에 1만 1,331명으로 격감되었다.¹⁵⁴⁾ 이처럼 종래의 유급제 자위단이 무급제 자위단으로 개편되면서 자위단원에 대한 給料支拂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자, 자연히 자위단 운영비는 감소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농민들의 자위단 운영비 부담이 경감되었던 것이다.

149) 「街村育成要綱」, 위의 자료집 『僞滿傀儡政權』, 519쪽.

150) 豊島弘明, 「地方團體としての街村と省・縣(上)」, 『滿洲行政』 제6권 제2호, 1939.2), 17-18쪽.

151) 豊間秀人, 앞의 글 「農村行政支配」, 272쪽.

152) 지방 행정의 담당 부서였던 民政部가 경찰 기구의 육성·강화에도 관여함으로써 지방 행정 기능이 분산·약화되었다고 인식한 일제는, 1937년 6월 민정부를 해산하고 국무원 직속의 內務局을 신설해서 지방 행정에 전념하도록 했다(앞의 책 『滿洲國史』(各論) 上卷, 269-270쪽 참조).

153) 이에 따라 吉林省에서는 치안이 불량한 지구부터 有給制 自衛團을 가급적 빨리 義務自衛團이나 靑少年團 혹은 協和義勇奉公隊로 각각 개편하도록 지도하고 있었다(吉林省公署, 「街村育成概況」(『內務資料月報』 제3권 제7호, 1936.7), 56쪽).

154) 앞의 책 『滿洲國警察史』 상권, 358쪽.

다음에 보갑제도의 두번째 모순, 즉 保甲職員(혹은 行政官署)에 대한 농민의 不信을 없애기 위해, 일제는 불신을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자위단 운영비의 경감과 아울러, 課稅臺帳의 정비 및 예산 제도의 확립, 그리고 街村公所員들에 대한 정신 교육 등을 통해 부정한 苛捐雜稅를 없애려고 노력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켰다.¹⁵⁵⁾ 또한 종래의 특권화된 유급 자위단을 무급의 의무제 자위단으로 개편함으로써, 유급 자위단을 私兵化하거나 그 자체를 이용해서 보갑민들을 경제적으로 수탈했거나 억압했던 구지배 세력의 횡포를 완화시켰다.

끝으로 보갑제도의 세번째 모순, 즉 만주 농민의 실제 생활 및 사회·경제적 관습과 관계없이 설정된 保甲을 폐지하고 그 대신 몇개의 自然發生的인 屯들로 地方行政의 末端인 村을 區劃함으로써, 종래의 보갑제도와 농민 사회 사이의 乖離를 메워보려고 했다. 게다가 유력한 街村에서는 경제 기초 확립을 위해 점차 共同組合을 결성해서 販賣·購買·農村金融機能을 정비함과 동시에,¹⁵⁶⁾ 街村單位의 義倉¹⁵⁷⁾制度를 만들고 농업 창고를 개설해서¹⁵⁸⁾ 街村民에 대한 救濟事業을 벌였다.

가촌제의 조직 상황을 살펴보면, 街의 직원으로는 街長·副街長·司計(會計)·辦事員 등이 있었으며, 村의 직원으로는 村長·助理員(助手)·司

155) 앞의 보고 「街村育成概況」, 56쪽. 吉林省 磐石縣의 경우 1938년도의 농민의 과세 부담은 1937년도에 비해 1兩當 3兩 내지 5兩씩이 경감되었다고 한다(앞의 보고, 56쪽).

156) 참고로 이 시기에 판매·구매·농촌 금융 등에 관여하고 있던 대표적인 조합은 金融合作社, 農事合作社, 興農合作社 등이 있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앞의 책 『滿洲國史』(各論) 하권, 224-254쪽을 참조하라.

157) 「만주국」, 민정부는 1935년 8월 罹災民에 대한 臨時救濟事業을 추진하기 위해 역대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던 義倉을 부활시키는 동시에, 각 현에 300만 원을 할당해서 의창의 기금과 창고 건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삼도록 했다(위의 책 『滿洲國史』(各論) 下卷, 941쪽).

158) 滿洲國 國務院 實業部 臨時産業調查局 編, 『農村實態調查一般調查報告書 --- 奉天省 遼中縣 ---』(上卷)(新京, 同調查局, 1936), 63-64쪽.

計·辦事員(文書)·跑牌的(通信員) 등이 있었다. 그리고 屯의 직원으로는 屯長·文書·跑牌的 등이 각각 1인씩 있었으며, 10-20戶로 구성된 牌에는 牌長 1인이 있어서 牌의 사무를 담당했다. 이들 街村公所員들의 봉급과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담했다. 각 촌은 몇 개 屯을 관할했다.¹⁵⁹⁾

가촌제 직원들의 선출 방법을 살펴보면, 街長 이하 직원들은 縣長에 의해 임명되었다.¹⁶⁰⁾ 村長은 屯長會議에서 人望이 있는 2명을 선거해서 縣의 行政科에 보고하면, 행정과에서 그 가운데 한 명을 촌장에 임명했다. 屯長은 屯籌備處에서 지명한 3,4명의 屯의 有力者 가운데 屯民이 선거해서 준비처를 거쳐 현에 보고하면 현에서 그를 屯장으로 발령했다. 牌長은 籌備處가 牌內의 10戶 속에서 추천을 받아 결정했다. 촌·屯·패장에 선임된 자로서 질병이나 집안 사정 등으로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縣의 認可를 얻어야 했다. 촌장이 된 사람들은 주로 地主였고, 노동자는 屯장이나 패장이 될 수 없었다. 屯內의 選舉라든가 중요 사항은 全屯民이 집결·상담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地主나 自·小作人 등 토지 소유자나 경작자들이 모여서 결정했다.¹⁶¹⁾ 이와 같은 선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은, 보갑제도와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나 경작자 등 屯의 유력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촌제의 책임자들, 즉 村·屯·牌長의 선출·임명은 부분적으로 屯民의 직접 선거 방식이 도입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제 치안 행정 당국자들에 의해 임명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자치적

159) 앞의 책 『滿洲國史』(各論) 상권, 298쪽 및 石丕城, 『偽滿集團部落 --- 寶清縣歸屯前後』, 孫邦 主編, 于海鷹·李少伯 副主編, 偽滿史料叢書 『偽滿社會』(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93), 56쪽.

160) 앞의 책 『滿洲國警察小史』, 101쪽.

161) 吉林省 開拓廳 農林科 編, 앞의 보고서 『農村實態調查報告書 --- 康德五年度夫餘縣四家子屯 ---』(1940), 286쪽.

성격을 띠고 있었던 보갑제도와는 달리, 가촌제에서는 街·村長 및 財務·交通·教育 등을 맡고 있던 가촌의 간부가 모두 縣에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농촌의 자치적 의미는 상실되었고,¹⁶²⁾ 그 대신에 농촌에 대한 행정 당국의 지배와 통제가 강화되었다.

촌장의 임무는 自治, 道路의 補修, 農事合作社 관계 사항 처리, 教育, 戶口調査, 家畜·家禽調査, 기타 縣公署와 屯 사이의 연락 등이었다. 둔장의 임무는 도로의 보수, 호구 조사, 가축·가금 조사, 둔내 불량 분자의 동향에 관한 보고, 세금 징수, 義倉糧穀의 納付督促, 種子의 배급, 農事合作社 관계 사항 처리, 토지 매매의 捺印, 屯民의 移住證明書 請求, 村公所 등에서 요구하는 馬車·賦役·徵發의 割當, 災害나 罹災民에 관한 보고 등이었다.¹⁶³⁾ 屯內에서는 '10家連坐制'가 실시되었다.¹⁶⁴⁾ 牌長의 임무는 둔장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 촌·둔·패장들은 현공서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일을 할 때에도 일단 현공서의 認可를 얻어야 했다.¹⁶⁵⁾

상술한 촌·둔·패장의 각각의 임무를 살펴보면, 가촌제에서도 종래 보갑제의 중요한 기능들이 계속 수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촌제는 이전의 보갑제도가 수행하고 있던 保甲的 機能(호구 조사 및 둔민의 이주 증명서 청구 등을 통한 주민 이동에 대한 감시, 불량 분자의 적발·감시, 도로 보수, 마차·부역 징발의 할당)과 行政的 機能(세금 징수, 自治)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갑제도의 기능에 없던 經濟的 機能(農事合作社 관계 사항 처리, 토지 매매의 捺印,

162) 「黃富俊筆供」(1954년 5월 5일), 앞의 자료집 『偽滿傀儡編政權』, 518쪽.

163) 앞의 조사 보고서 『農村實態調査報告書 --- 康德五年度 夫餘縣四家子屯 ---』, 287쪽.

164) 石丕城, 앞의 글 『偽滿集團部落 --- 寶清縣歸屯前後』, 57쪽.

165) 위의 조사 보고서 『農村實態調査報告書 --- 康德五年度 夫餘縣四家子屯 ---』, 287쪽.

義倉糧穀의 납부·독촉, 종자의 배급 등)까지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가촌제의 촌·둔·패장의 임무가 보갑제의 보·갑·패장의 그것과 다른 것은, 전자에 경제적 기능이 보장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즉 가촌제에서의 촌·둔·패장은 農事合作社와 같은 공동 조합 사항, 종자 배급, 가축·가금 조사, 義倉糧穀의 납부 독촉 등의 경제적 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街村制度要綱」에서 “經濟的 職能과 保甲的 機能을 함께 갖춰서 街村行政의 종합화를 도모한다.”¹⁶⁶⁾라고 규정하고 있었듯이, 가촌제는 보갑제가 지니고 있던 일반 행정적 기능, 보갑적 기능 이외에도 경제적 기능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167) 상술한 제 사실을 살펴보면 가촌제는 종래의 保甲制를 區村制에 흡수해서 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보갑제도의 기능을 한층 강화 내지 확립시키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⁶⁸⁾

한편 보갑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가촌제는, 상술한 것처럼 보갑제도가 지니고 있던 모순들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지만, 그 자체 내에 또 다른 모순들을 배태하고 있었다.

가촌제의 첫번째 모순은 街村財政에 대한 上府에서의 보조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재정의 대부분을 街村民들에게 의지함으로써, 당연히 가촌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街村稅의 課稅方法이 재산(특히 토지)의 다과에 따른 累進稅가 아니라, 토지 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한 定額稅였기 때문에, 대토지 소유자의 조세 부담이 소토지 소유자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웠다는 점이다. 그 결

166) 앞의 자료 『街村制度快覽』, 13쪽.

167) 앞의 조사 보고서 『農村實態調查一般調查報告書 --- 奉天省 遼中縣 ---』, 63쪽.

168) 『康德三年度保甲特別工作方針並要領』,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情報處 編, 『省政彙覽 第7輯 --- 安東省篇 ---』(新京, 同情報處, 1936), 337쪽에 所收.

과 富農보다는 貧農쪽의 토지세 부담율이 높았고, 極貧農일수록 그 부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戶別課稅 역시 소득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 등급별 혹은 매호 평균 정액 세율의 방법으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부자에게는 가벼웠고, 가난한 자에게는 무거웠다는 점이다.¹⁶⁹⁾

가촌제의 두번째 모순은 만주에서 실시된 가촌제가 日本의 市町村制를 모방한 것이었기 때문에, 만주 농촌의 實情과는 상당한 괴리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즉 만주 농민들이 가촌제에 대한 어떠한 조직적·정신적 유대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 가촌제와 농민 사이에는 “단지 명령에 의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¹⁷⁰⁾

가촌제의 세번째 모순은 1938년 이후 일제가 統制經濟를 실시하면서 糧穀出荷를 위해 가촌 조직을 미리 앞당겨 강화하기 시작하자, 가촌 조직은 縣行政의 瓜牙로 변질되어 주민 통제를 위한 기구 혹은 농민의 식량 수탈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점이다.¹⁷¹⁾

요컨대 보갑제도가 지닌 모순을 해소함으로써 만주 사회, 특히 농촌 사회에 대한 치안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실시된 가촌제는, 종래의 보갑제도의 모순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가촌제 자체가 日本의 市町村制를 모방해서 만주 사회에 그대로 이식된 것이었기 때문에, 만주 사회, 특히 농촌 사회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식민지 수탈을 위한 前衛機構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게 되었다.

169) 關口猛夫, 「街村財政の現狀とその諸問題」, 『滿洲評論』, 제16권 제8호, 1939), 12쪽.

170) 石橋清, 「地方團體の發生過程と滿洲國地方制度の特質」, 『滿洲國協和會編, 「協和運動」, 제2권 제3호, 1940.3), 152쪽.

171) 「黃富俊筆供」, (1954년 5월 5일), 앞의 자료집 『偽滿傀儡政權』, 518쪽 및 앞의 심문 조사서 「黃富俊口供」, (1954년 8월 21일), 518쪽.

III. 結 論

전술한 것처럼 일제는 경찰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만주 전역의 구석 구석까지 치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의 치안 유지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민중 조직으로서 보갑제도를 실시했던 것이다. 즉 일제는 인구가 희박한 興安 各省을 제외한 만주 전지역에 대해 보갑제도를 실시한다는 원칙 하에 수많은 保·甲·牌 및 自衛團을 조직한 뒤, 舊官吏·地主·富農·有力者 등을 포섭해서 이들을 保·甲·牌의 各長이나 자위단의 간부직에 임명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만주 민중들을 지배하게 하는 植民地의 代理支配體制를 구축해갔다.

이때 保·甲·牌의 各長들 및 자위단의 간부들은 규정상 경계 및 방어 임무, 통비 예방, 자위단 및 그 經費 징수, 규약 위반자 처분, 戶口 調査, 武器團束 등의 직무를 통해 경찰 관리를 보조하고 보갑 규약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규정과는 달리, 이들은 실제로 縣公署의 手足이 되어 縣으로부터 하달된 포고문의 전달, 납세 독촉, 호구 조사, 총기 회수, 보갑법의 선전, 保甲民에 대한 감시·감독, 賦役 및 徵發時 보갑민의 動員 등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위단의 편성이 보갑제도 시행의 최대 업무로서, 자위단의 활동이 보갑제도 운영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갑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통솔했던 자는 보갑 직원이 아니라 자위단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보갑제도가 지방의 治安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다.

한편 보갑제도를 치안의 보조축으로 삼고자 했던 일제는, 빈번한 戶口 調査를 통해 항일 분자를 색출하거나 항일 유격대의 부락 내 잠복·침입의 방지와 아울러 부락민과의 연계를 차단했다. 또한 일제는 주민들의 居住上의 이동 상황을 추적하여 이들의 '遊擊隊化'를 미연에 방지

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은닉된 총기와 탄약을 회수함으로써 민간인들의 抗日武裝化 및 항일 유격대로의 무기·탄약의 供與를 방지했다. 게다가 일제는 連坐制度의 도입을 통한 連坐罰金의 부과를 통해 주민들 상호간의 감시를 조장함으로써, 항일 분자(소위 通匪者)의 색출 및 항일 유격대의 부락 침투를 예방하는 데에 커다란 효과를 올렸다. 더욱이 일제는 보갑제도에 근거하여 자위단을 조직한 뒤, 이들로 하여금 항일 유격대들의 부락 공격에 대비하게 하거나 日滿軍警의 토벌 작전에도 참여함으로써, 자위단을 지방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축으로 삼았다.

결국 보갑제도는 「滿洲國」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連坐制를 통한 保甲民 상호간의 監視申告體制의 확립은 通匪 행위를 감소시켰고, 보갑제도를 통해서 행해진 민간인 총기 및 탄약의 회수는 농민들의 항일 遊擊隊化 내지 항일 유격대로의 총기 및 탄약의 供與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항일 유격대의 무기 및 탄약의 需給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또한 保甲道路의 정비, 保甲電話의 보급은 日滿軍警의 出動時間을 단축시켜 항일 유격대의 행동 반경을 축소시켰다.

그러나 보갑제도는 여러가지 矛盾을 배태하고 있었다. 즉 보갑제도는 보갑민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게 했으며, 親日的 性向의 舊支配層들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보강해 주는 동시에, 貧農層에 대한 낡은 봉건적 지배를 유지·강화시켜 주는 하나의 機構로 변질되었다. 게다가 警察機關의 意志를 반영해 주고 있던 보갑 직원은 보갑민들에 대한 監視·徵稅·賦役動員·不正行爲 등을 저질렀다. 더 나아가 保甲의 區劃이 농민들의 실생활이나 사회·경제적인 관습 등을 고려하지 않고 治安上 혹은 戶數關係上 임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생활상의 큰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전통 사

회 자체를 파괴시켜 버렸다. 그로 인해 보갑 직원 및 보갑제도 자체에 대한 농민들의 不信의 골은 매우 깊었다.

이리하여 일제는 보갑제도가 지니고 있던 여러가지 모순들을 극복하고 만주 농촌(혹은 농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1930년대 말에 들어서 '街村制'라는 새로운 농촌 행정 지배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보갑제도의 의도는 換骨奪胎되어 街村制로 이어지면서 일제의 만주 농촌(혹은 농민) 지배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